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 김수암

KINU 연구총서 09-11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폼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주) 늘폼플러스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 이금순, 김수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연구총서 ; 09-11)

ISBN 978-89-8479-513-6 93340 ₩7500

북한 인권[北韓人權]

342.10911-KDC4
323.095193-DDC21

CIP2009003918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인권침해 구조 및 요인에 대한 이론 검토	5
1. 인권의 특성	7
2.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9
3.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25
III.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 요인	49
1.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논쟁	51
2. 국내적 요인	53
3. 국제적 요인	106
4. 제반요인 간 상관관계	122
IV. 북한인권 개선 전략	131
1. 기본방향	133
2. 세부전략	135
V. 결론	151
참고문헌	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1

표 목 차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표 II-1>	국가 억압기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2
<표 III-1>	인권 관련 북한당국의 법 제·개정 현황	82
<표 III-2>	배급 순위와 배급 상황	95
<표 III-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관리 순환구조	97
<표 III-4>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103
<표 III-5>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요인	104
<표 III-6>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105
<표 III-7>	미국의 대북지원 현황(1995-2008)	114
<표 III-8>	유엔인도지원조정국 집계 대북지원 현황	116
<표 III-9>	한국정부차원 대북무상지원 세부내역	117
<표 III-10>	북한의 무기 수출입 추정치	119
<표 III-11>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	120
<표 IV-1>	민주주의 지원 양식	137
<표 IV-2>	법치지원 표준안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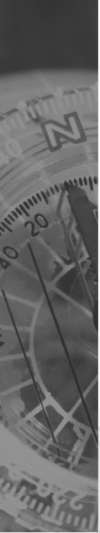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Ⅲ-1> 수령체제와 인권	55
<그림 Ⅲ-2> 정치우위 법·제도 및 인권	71
<그림 Ⅲ-3> 불균등 발전전략과 인권	92

I. 서론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이제까지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주로 특정사안의 인권침해 실태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개선 요구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인권 관련 구체적 개선전략 수립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요인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각 사안별 인권침해 양태 및 개별 침해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침해요인별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에 근거하여 통합적인 개선전략이 요구되므로, 개별 침해요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침해요인 간의 연계성을 밝혀내고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2장에서는 특정국가 및 사회의 인권 침해 구조 및 요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이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이론을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국가의 억압기제 활용 목표 및 실제 인권가해자의 변화과정 등을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특정사회의 인권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국내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적 요인은 안보위협, 인권감시제도, 대외원조, 군사거래, 대외무역이 인권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들 제반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침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틀 마련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I
II
III
IV
V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분석틀을 토대로 북한 내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유린되는 상황을 요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 국내적 요인을 정치적, 법·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특정국 인권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된 요인들을 실제 북한상황을 감안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현황을 재조명하였다. 실제적인 개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난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이 각 인권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개선전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인식과 역할 분담 하에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Ⅱ. 인권침해 구조 및 요인에 대한 이론 검토



특정사회의 인권침해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나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특성이 특정사회의 인권침해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틀로 여겨져 왔다. 또한 인권규범이 국제적 가치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적인 갈등이나 압력들이 특정국가 내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변수만으로 특정지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으며, 각 변수가 갖고 있는 영향력도 사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인권침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인권의 특성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이 확인되었다. 즉 국적, 인종, 신분 등의 차이를 떠나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적 안전, 평등, 정치적 자유, 사회적·경제적 안녕(wellbeing) 등에 관한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1976년 발효되었고, 국가들이 비준함에 따라 제도적인 협약이행 구조 및 보고의무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조약기구들은 전문적인 권리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인권담론에서 주요 관심영역에 따라 양극화되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개인적 안전과 개인의 정치적 참여 및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

I
II
III
IV
V

리를 보장하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시민적 자유, 즉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권, 고문, 부당한 대우, 노예, 강제노동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권 및 개인의 안전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권, 사교, 양심, 종교의 자유권,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및 결사의 자유, 선거 및 피선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경제적 불평등성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특히 자기결정권, 평등권, 노동권, 정당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여가권, 사회보장권,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권논의에서는 두 영역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강화작용(mutually reinforcing)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즉 두 영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각 권리사안들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어, 한 영역의 권리침해는 다른 권리침해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제까지 두 영역 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은 주요 논쟁점이 되어 왔었다.³ 냉전시기 서방 국가들은 시민적·정치

1.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었던 매리 로빈슨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199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 여성인권대사실, “북한인권문제 기초토론자료집,” (여성인권대사실, 2006) pp. 26-27.

3. Amartya Sen, “An argument for the Primacy of Political Rights: Freedom and Needs,” *New Republic* 10 (January 1994), pp. 31-38.

적 자유를 강조한 반면, 동구권 및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실제로 허울뿐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발권에서는 두 영역의 상호 동시 진전을 강조하여 두 영역 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2.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 포괄적 접근

인권침해 유형(pattern)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혹은 국제적 맥락(context)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⁴ 인권침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형태, 발생과정, 가해자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양적 연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침해의 의도된 목적 및 실제적 영향력(결과)에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 인권침해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사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적 변수가 지역단위 인권상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 규범, 국가행위, 대중운동, 국가 폭력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결정 및 전략을 개발하는데도 유용하다.

국제관계 현실 상 국가들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정당성,

⁴ Mayra Gomez, *Human Rights in Cuba, El Salvador and Nicaragua: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buse* (London: Routledge, 2003), p. 33.

군사적 보호 및 여타의 지지를 위해 국제체제 및 초국가적 행위자에 대해 의존하게 되는 환경 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체제 내 국가의 취약성 및 장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체제이론에 따르면, 국제적 체제 내에서 국가들이 불평등한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국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능력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가정체성과 같은 기타 변수들이 영향력을 줄여 줄 수도 있으나 자원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압력에 취약하다. 국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가는 내부적 안정성과 갈등 등에 따라 대응력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제적 압력의 증가가 인권상황 개선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특정사례 가운데 ‘압력’이 다른 사례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개별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서로 상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나. 억압기제와 인권

(1) 이론적 접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양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권연구에서는 국가들이 왜 억압이란 기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현실주의적 해석으로, 국가는 정당한 합리적 행위주체로서 인권침해 양태도 국가이익 증대, 즉 힘을 극대화하고 권력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

한다.⁵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유사하다. 정치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단일한 주체로서 특정 조치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감안하여 정치적 결정과정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가정된다. 국가는 다른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이익은 국가안전보장, 내부 결속, 경제성장, 국제무대에서 지위 향상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국가이익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 국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 내부갈등, 경제악화 시에 국가는 억압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 집단(target groups)은 국가권력 및 국가안전보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지속 혹은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억압은 정치적 불안정과 도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된다. 국가의 생존은 바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내부정치제도, 사회적·문화적 특성 혹은 지도자 및 국민 개인의 인성 등에 관계없이 국가안전보장에 집착하게 된다.

맑시즘은 국가폭력을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계급적 불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제로 간주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이 ‘힘(power)’을 현대(자본주의)국가의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한 반면, 맑시즘에서는 국가이익을 계급적 토대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따라서 정치적 갈등은 계급적 갈등으로서, 국가

⁵- *Ibid.*, pp. 40-42.

⁶- *Ibid.*, pp. 43-44.

I
II
III
IV
V

폭력은 시민적 소요를 제거하고 사회적 이탈(disengagement)과 계급폭동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달리 맑시즘은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정치적 엘리트들은 지배계급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호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는 계급적 억압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표 11-1 국가 억압기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구분	국가목표	국가폭력 근거
현실주의	국가의 힘	국가생존 보장 안보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
맑시즘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	지배계급의 이익 증대 계급적 억압 정당화
구성주의	시기와 공간에 따라 변화	정책형성과정은 거시사회요인에 의해 영향

현실주의와 맑시즘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스탠리(Stanley)는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성에 대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였다.⁷ 첫째, 합리주의적 가정은 국가와 국가성원은 과거의 역사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합리주의적 접근은 국가이익은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른 성원들은 특정이익에 대해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합리주의는 억압과 저항 간에 명백한 연계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부정의를 당연한 사실로 규정할 뿐 실질

⁷ Ibid., pp. 44-45.

적인 발생요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억압과 저항 간의 고리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실제로 억압이 증대되면 저항이 극대화되는 반복적인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억압과 저항 간의 반복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감정(emotionality)의 역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테러리즘의 목표가 주민들 사이의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감정의 역할은 중요하며, 억압은 매우 다양한 감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억압의 기제가 살해, 구금, 실종, 고문 등이라면, 저항에 대한 참여를 매우 위협스럽게 함으로써 저항을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합리주의 모델은 국가가 내부적으로 일관성 있고 중앙집권적이며, 단일한 단위로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탠리(Stanley)는 국가는 내부적으로 다른 정책 목표를 갖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영향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관료기구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열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대응형태에 대해 대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설명은 국가의 합리성에 대한 기본가정과 ‘합리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주의 및 맑시즘과 차이를 보인다. 국가이익은 구성되어지고 도전받아 왔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인 국가이익이나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국가행동의 동기를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용어 자체가 인위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특정지역 및 특정시기에 이성적인 것이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는 비이성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취하는 행동들과 이를 결정하

I
II
III
IV
V

는 정책형성과정은 국가나 행위 주체가 속한 이념 형태 혹은 주관적인 세계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른 이론에서 무시되어 온 이면, 정체성, 문화 등 거시사회요인들에 의해 국가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및 인간 감정들도 강조될 여지가 있게 된다. 국가권력이 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 틀 중의 하나는 모스트-스타 정책결정 모델(The Most-Starr Decision-making Model)이다. 동 이론은 정책결정이 합리적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자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단일한 행위자들로서 모든 정책적 대안과 결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최대 관심은 정권의 정치적 힘(Strength)과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협(Threat)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정권 지도자는 위협이 힘보다 작다고 인식하는 상황까지는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고 정권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위협이 힘을 넘어서게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폭력이라는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곧 인권 침해상황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재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s)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힘/위협 간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은 위협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주요 사안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데번포트(Davenport)는 기존 연구들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인권, 공포정치(state terror), 부정적 제재(negative sanctions))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세 영역은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억압’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⁸ 사례연구들은 사건중심의 접근(events-based approach to measurement)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정시기, 특정지역에서의 억압을 측정하기 위해 억압적인 사건 혹은 부정적인 제재의 회수를 활용하여 왔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제약,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제약 등을 포함한 검열 및 정치적 제약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들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반면에 인권연구문헌들은 기준중심의 측정(standards-based measures)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훈련된 전문인력들이 국제사면위원회 혹은 미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항목별로 코드화하는 작업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요 관심 사안은 구금, 고문, 사형, 실종 등 개인적 혹은 신체적 존엄에 대한 침해이다. 공포정치를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로는 정치적 테러 척도(Political Terror Scale)를 사용한 것으로, 인권침해가 정권의 공포정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공포정치와 심각한 신체적 존엄에 대한 인권침해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부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프리덤 하우스 척도를 활용한 실증적 인권연구들로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⁸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London: Routledge, 2003), p. 20.

I
II
III
IV
V

억압 관련 기존 연구들은 억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소 상이하지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덜 폭력적인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발전은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제재 혹은 인권침해의 감소를 보여준다. 세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보다 억압적인 인권상황을 보이게 된다. 또한 다수의 사례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정치적 저항이 존재할 경우 더욱 억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구가 억압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 내 군대의 존재가 억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제까지 많은 사례연구에서 군사정권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책수단으로서 억압이 과거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료들의 억압기제 선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전에 억압적인 방식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 억압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저항 등의 비용을 감수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용이하지 않은 정책선택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 관리가 국민에 대한 억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선거는 시민들에게 지도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선거제도가 작동하는지 여부는 민주화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군사정부는 민주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인권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군사적통제력을 보유한 정부는 시민 정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용에 대한 장애들을 제거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가용 정책수단과 비교할 때 억압기제의 사용비용을 저하시키게 된다.⁹

⁹ *Ibid.*, pp. 26-27.

군사정권의 경우 자원의 배분과정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군사비 지출과 군사관련 변수는 기본욕구의 제공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보수적 특성상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유형의 정부에 내재한 조직적 효율성이 기본욕구의 수준을 잠재적으로 고양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긍정적 견지에서 군사통제하의 정권은 사회개발에서 근대화 세력(modernizing force)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사 친화적 정부의 방위비 증가는 결과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이전시켜 전반적 물질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¹⁰

(3) 제반변수의 영향력

국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제반 변수들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복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제반 변수에는 인구증가, 경제성장, 문화적 영향력, 좌파정권, 국제무역 및 투자,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외부 및 국제환경 등이 포함된다.

첫째, 제반변수들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인지되는 위협의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억압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된 가설은 민주주의와 억압 간의 상관관계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하는 가장 유용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최소의 갈등을 통해 요구들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갈등이 억압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의 부

¹⁰- *Ibid.*, pp. 111-112.

I
II
III
IV
V

담을 갖는 국가는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출하는 요구('burgeoning demands')에 직면하기 쉽다.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에 대해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희소성에 의해 야기되는 실질적인 사회적·정치적 긴장에 휩싸인 극빈국은 가장 불안정하게 되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쉽다. 반면 경제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보다 만족할 것이고 위협의 수준을 감소시켜 정권에 반대하여 동원되는 경향이 덜 하게 된다. 국제전에 참여하는 경우, 외부 위협은 내부 반대와 정권지도자에 의해 인지되는 국내위협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결정자의 신념체계가 현실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에 대한 영향을 통해 작용하게 된다. 히틀러의 나찌즘은 유대인을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공포스러운 인권 유린 역할을 하는 국가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둘째, 제반변수들은 지도자들의 힘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억압에 영향을 미친다. 변수가 억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결정자의 마음 속에 정권의 힘을 감소시키고 그것에 의해 힘/위협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억압의 설명에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가 힘에 대한 정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은 힘과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변수이다. 강력한 경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힘에 대한 경제발전의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선진국 정권이 국내외의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힘을 보다 강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에 의해 특정국가가 지배된다는 사실이 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폭력의 사용을 통해 권력을 잡거나 폭력의 사용을 위협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정권의 정통성을 의문시하게 된다. 또한 정권내부에서조차도 초헌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실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한 정통성을 획득 하지 못한 부담으로 남게 된다.

셋째, 힘/위협 비율(Strength/Threat ratio)의 인지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정책결정자의 유용한 정책대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기회의 고려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물리적 폭력으로 반대자를 공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자를 수감하는 등 억압적 조치를 수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전체 시민에 대한 대규모 인권위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안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르려는 개인을 가진 관료주의는 높은 수준의 억압이 발생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이다. 구조적 종속(structural dependence)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이다. 이는 종속적 경제가 반대 세력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치적 장치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다양한 대안에 반대되는 것으로 억압의 옵션을 채택하려는 정권지도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경계 상태(state of alarm)에서 정권은 하나의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만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유용한 정책대안의 결과와 대비되는 억압의 결과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지는 억압기제 사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정치체계의 유형과 정치문화의 속성이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비용구조(pay-off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결정과정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억압의 이전 수준, 민주주의와 군사 통제, 경제개발

I
II
III
IV
V

등을 포함한다. 만일 이전 기간 억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폭력기제 채택이 보다 고비용의 위험한 것이 된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쟁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불미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¹¹

다. 인권 침해 구조

(1) 가해자 특성 변화과정

인권침해의 주요방식으로서 국가폭력이 실제 이행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양태를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가해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가해자가 되는 과정은 준비 단계, 진입단계(initiation phase), 습관화와 일상화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째, 준비단계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종의 경찰 및 군부대의 구성원이다. 여기에는 경찰, 군대, 교도소 경비, 엘리트 세력, 특별부대, 비밀기관요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명백하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의 위치는 자신이 속한 특수한 계급에 의해 표시된다. 엄격한 명령체계 하에서 각 계급의 임무와 의무가 특화되면 개인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즉 명령과 복종 구조에 따라 충성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은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의 없이 하달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탈개인화된 조직 내에서 신참은 이름이 아니라 계급과 번호에 의해 알려진다. 신참이

¹¹- *Ibid.*, pp. 23-27.

개성을 보여줄 여지는 전혀 없으며, 다만 폐쇄된 비밀세계의 구성원일 뿐이다. 조직에서는 계급에 따라 상이한 규칙과 도덕이 적용된다. 신참자에게는 외부세계와 자유로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

신참들은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 하는 군사 훈련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익히고 규칙과 도덕과 조직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참은 훈육되고 명령에 이의 제기 없이 복종하도록 배운다.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은 개인을 명령에 복종하도록 변화시킨다. 이러한 훈련을 거치면 신참은 자신이 이전과 상이한 도덕적 태도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유일한 의무는 명령을 수행하고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상급자에 책무를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례에서 보면, 인권 침해자는 일반적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게 된다. 특수훈련에는 일반군사훈련보다 더욱 가혹하고 계속적 위협, 모욕, 감정적·육체적 폭력이 포함된다. 신참은 잔혹한 명령과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지내는 가운데, 위로부터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명령받고, 그들의 다수는 애완동물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애완동물을 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 내에서 신참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유일한 생존방법이 명령대로 함으로써 처벌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과 상이한 규범 및 가치에 익숙해지게 되고,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복종하고 강제로 실행하게 될 것이다.¹²

¹² Alette Smeulerus, "What Transforms Ordinary People into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Carey, Sabine C. and Poe, Steven C.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241-243.

I
II
III
IV
V

둘째, 진입단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행되는 실제적 범죄에 점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참의 폭력행위에 대한 개입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첫 단계는 죄수를 경비하고 음식을 갖다 주게 한다. 둘째 단계는 고문실로 데려가게 하고 고문 실행 후에 방으로 데려다 주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죄수가 고문당하는 방으로 무엇을 가져오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고문을 실행하는 동안 주목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역할을 조금씩 늘리고 다양한 고문기술 실행 사이에 희생자를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문과 고문을 당하는 사람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동시에 자신들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운명도 희생자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게 된다. 신참들은 죄수들이 그들이 참여하든 안하든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신참들이 처음으로 고문실행 동안 보조하도록 요청받을 때 끝나게 된다. 고문, 살해, 신체를 손상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신참은 결정적인 선을 넘어 가해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신참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환경과 공포로부터의 압력으로 명령에 저항하거나 불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단 가해자가 된 신참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령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반응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조직에 의해 지탱되는 이데올로기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족주의, 애국주의, 공산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위의 행위들이 범죄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정의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합리

화·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어떠한 비난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변명하게 된다.¹³

셋째, 습관화와 일상화 단계이다. 합리화, 정당화 이외에 많은 자연적 변호 메커니즘이 죄의식, 동정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용된다. 많은 가해자들은 실제로 어떤 통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상부 명령을 거절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대규모 인권 침해상황은 명백한 위계적·기능적 분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하위계급은 사소한 역할을 해서 자신들이 기계에서 톱니바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폭력의 과정을 파편화함으로써 참여개인들이 책임과 책무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경향이 강화된다.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을 인격체로 규정하지 않고, 일상적인 도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악한 존재 혹은 저급한 존재로 본다. 이렇게 되면 희생자들을 고문하고 신체를 손상하며 살해하는 행위 자체가 용이해진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처음단계에서 나타났던 혐오감 및 희생자에 대한 연민이 자연스럽게 극복되게 된다.¹⁴

(2) 사적이익 추구

폭력기제를 통한 통제를 국가정책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인권가해의 주범(principal)과 대리인(agent)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은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를 공유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집행과정에서 폭력사용자체가 대리인들에게 자신들의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¹³- *Ibid.*, pp. 243-247.

¹⁴- *Ibid.*, pp. 247-249.

I
II
III
IV
V

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지도자와 폭력집행에 관여하는 실무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전반적인 폭력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무대리인들의 목표는 정권지도자의 목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실무대리인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또한 대리인은 자신들의 행동을 명령자로부터 은닉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대리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뇌물 요구를 통한 금전적 혜택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안전병력 및 통제기관들은 보다 더 폭력적인 실무자들을 확보하게 되고, 이들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 정권책임자는 실무자들의 목표와 행동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정보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자는 대리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선별과 훈련을 통해 대리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인권침해와 폭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관료들의 행태를 언론과 비정부기구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선거를 통한 관료총원으로 관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권지도자는 실무자들에게 관대하게 보상하며 총원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인도의 사례를 보면 경찰조직과 구금시설에서의 관료적 통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분리주의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국가폭력 사용이 전략적인 동기이다. 그러나 실제 군인이나 경찰 인력들의 독립적인 행동이 전반적인 폭력상황을 초래하며, 뇌물을 탈취하기 위해 고문이 사용된다. 보상증대는 억압의 오용을 부분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폭력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금전적 보상과 별도로 복수, 강간, 폭력 등을 사용하게

된다. 폭력의 집행자로 기능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은 전반적인 임무에 충실한 자 뿐만 아니라, 역선택(adverse selection) 즉 단순히 폭력을 실행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폭력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를 선발하게 된다. 갈등은 인권침해를 증대시키고, 정권과 반대세력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억압이 유발된다. 갈등상황은 대리인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만든다. 또한 갈등은 전략적 폭력과 이기적인 폭력이 혼재되도록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정권의 고문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부패가 심각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부패사건이 경제적 동기에서 유발되거나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부패수준은 자신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저임금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권지도자의 무관심과 무주의 및 기존 폭력의 강화효과로 인해, 대리인들은 의식적으로 억압적인 활동을 증대시키게 된다.

3.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가. 국내적 요인과 인권

(1) 정치 구조적 요인

특정국가 내 인권실태는 정부의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최근의 양적 사례연구에 의하면 민주적 정부의 존재는 인권침해상황 여부를 예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민간

I
II
III
IV
V

인에 대한 더욱 더 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조치가 행해져 왔다. 반면 민주적 국가들에게는 개인을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의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침해의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적 절차는 평화적인 갈등 조정노력들을 용이하게 하고, 타협과 주민참여를 위한 구조화된 통로를 허용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민주정치 체제 하에서는 제도적으로 국가기구에 대한 특정정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포우(Poe)와 테이트(Tate)는 153개 국가를 대상으로 8년 기간 동안의 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¹⁵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상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절차에 초점을 둔 밴하넨(Vanhanen) 지표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의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측정하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지표가 활용되었다. 프리덤 하우스 지표는 유권자 참여, 후보자 간 자유 및 경쟁선거, 보통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의 정당성, 소수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조직화하고 보호하는 권리 등을 다루고 있다. 밴하넨 지표와 프리덤 하우스 지표는 개인존엄권리의 침해와 의미 있는 연계를 보이고 있다. 통치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정치적 권리라고 할 때, 이외에도 다양한 독립 및 종속 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식민지 역사가 민주적 혹은 권위주의적이든 식민주의자들이 남겨 놓은 문화적 제도적 유산을 통해서 인권침해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식민지 역사가 현재

¹⁵ Steven Poe, “The Decision to Repress: An Integr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Research on Human Rights and Repression,” Carey, Sabine C. and Poe, Steven C.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 21.

인권상황을 예견하는데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사례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치문화’ 연구들에 의해 좌파 혹은 우파 등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 특정사회에서 보다 나은 인권상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다면, ‘좌파 국가들이 기본인권에 대해 덜 탄압적이다’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보호하는 민주적 기제들이 인권보호에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가 국민들의 욕구의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민주적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욕구에 대한 대응이 충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폭력에 대한 민주주의 영향력은 항상 선형적인 것은 아니다. 물러(Muller)와 페인(Fein)에 따르면, 정권의 억압성과 정치적 폭력은 상호 역관계 U기능(매우 폭압적인 권위주의적 정권 혹은 거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유’국가)으로 연계되어 있다.¹⁶ 즉, 민주화의 중간과정에 있는 정권이 가장 폭력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More Murder in the Middle(MMM)이론으로 호칭된다. 비자유국가에서 자유가 증대되면 반대의견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국가는 보다 폭압적이 되어 광범위하며 강력한 폭력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화과정에서 확대된 국가구조는 내부적·국민적 요구와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민주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통성이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부적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¹⁷

¹⁶ Ibid.

¹⁷ Mayra Gomez, *Human Rights in Cuba, El Salvador and Nicaragua: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buse*, p. 34.

I
II
III
IV
V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통치행위가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헌주의가 실제 인권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공개재판은 개인존엄의 권리 실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표현, 언론, 집회 등 개인의 자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여 서유럽과 유럽기반 국가 등 특정 문화권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사법부 독립과 국가폭력 간의 연관성은 희박하였으나, 실제 규정이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관행에서는 인권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사법심사(위헌심사)제도가 국가의 독단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팽배하였으나, 실제 사례연구가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미흡하며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간인을 특별 혹은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억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주요 요소인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는 법률제정에 있어서, 기간규정을 두는 것은 실제 의도와 달리 비상사태를 지속시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2) 법·제도적 요인

법치의 수준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국가들은 사회적 안정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¹⁸ 권위주의 국가들은 군부와 경찰력을 이용하여 정권유지 및 강화

¹⁸-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Factors that comprise and determine effective rule of law within a society,” <<http://www.hrschool.org/doc/mainfile.php/lesson40/631>>.

를 시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들을 활용하여 왔다. 요르단 정부 내에서 요르단 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비윤리적 행정구류가 만연하여 왔다. 요르단의 범죄 예방법은 지역 행정관에게 행정구류권을 주는데 이는 주로 이들이 멋대로 시민들을 감금시키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이미 재판을 통해 석방이 지시된 시민들을 잡아 두는가 하면, 범죄 예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시민들을 감금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당한 법의 절차에서 허용되는 권리들을 침해당하고 있다. 요르단의 교도소에서 다섯 명 중 한명이 행정구류를 이유로 감금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국가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가 요르단 행정 관리자들이 11,870건의 행정구류를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54년 제정된 범죄 예방법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이를 도우려하는 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는 자, 거주지 절도범, 훔친 물건을 매매하는 자, 또는 방면되었을 경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 행정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법정 증언들을 통하여 많은 행정관들이 마지막 조항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 예방법의 규정 범위 밖에서 처벌 받는 사람들로는 ‘보호’ 관리를 받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 등이 있다. 행정관들은 범죄 예방법에 호소하며 도덕적 결함을 가진 가족 구성원으로(대부분 남성) 인해 삶에 위협을 받은 여성들에 대하여 ‘보호’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때때로 부족 간 보복의 위협이 예상되는 남성들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맥락으로, 무기한으로 행정구류시키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행정관들은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들 대신 피해자들을 처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I
II
III
IV
V

어처구니없는 처사를 보인다. 한편, 당국은 종종 외국인들을 행정구류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신원 확인이나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을 추방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외국인들과 보호 관리를 받는 남성들과 여성들은 무기한으로 구류 되고, 이들이 이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편도 없는 상황이다.

관리들은 각종 규율을 이용해 개인적 적을 구속시키기도 하고, 타인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볼모로 다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도 하며, 그저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밤에 혼자, 또는 친척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여성, 노점상, 거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혹은 전과자) 행정구류시키고는 한다.

정부는 요르단의 일반 형사상 절차법에 명시된 구속자들의 권리와 당국이 한 개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의무들을 (예를 들어, 정식 고발하기 위해서는 용의자를 구속한지 24시간 이내로 기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피해가기 위하여 행정구류를 가장 많이 적용한다. 행정관들은 보석되었거나 형을 복역한 이들을 행정구류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 행정관은 심지어, ‘우리는 감금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가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 경우에 범죄 예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구류시킨다’ 라고 하였다.¹⁹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는 민주화과정에서의 법치가 약화되기도 한다. 경찰비리가 심각했던 멕시코에서는 일당독재의 유산을 답습한 제도화된 경찰권력으로 인해 민주정부의 경찰개혁 노력이 제약 당하였다. 경찰 및 사회통제기관들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경찰개혁 시도는

¹⁹ Human Rights Watch, *Guests of the Governor: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mines the Rule of Law in Jordan*, 2009.

지역 간 및 관료 내 갈등을 악화시켰다.²⁰

브라질에서 1964년 쿠데타 이후 21년 동안 불법 구금과 고문의 체계적 활용(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는)이 정부의 보안세력(security forces)에 의해 일반화된 관행이었다. 쿠데타 이후 10,000-50,000명이 체포되었고 망명자의 수가 1982년에는 10,000여명에 이르렀다.²¹ 브라질에서 대규모 인권위반의 근본원인은 - 억압체계,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인권위반을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위기, 정책결정 엘리트에 대한 외국의 영향과 같은 세계적 환경, 억압 희생자의 구성 - 4가지 접근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억압체계(repression system)란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달리 게릴라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법적 방법을 적용하는 권위주의적 정부 혹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권 기간 인권유린의 대상 집단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1964년 신군사정권이 즉각적으로 통제 아래 두기를 원했던 사회 부문으로 좌익정치인, 농민동맹, 노조, 학생동맹 UNE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대중에 통제를 행사하고 인권유린 희생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에 관련된다. 심지어 새로운 정권에 대한 반대 지점까지 이를 수 있는 제도, 브라질 변호사회(Brazilian Bar Association), 브라질언론인회(Brazilian Press Association), 카톨릭 교회 등이다.²²

²⁰- Daine E. Davis, "Undermining the Rule of Law: Democratization and the Dark Side of Mexico,"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8, No. 1 (2006).

²¹- *Ibid.*, p. 65.

²²- *Ibid.*, p. 85.

I
II
III
IV
V

(3) 경제적 요인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절대빈곤에서는 상당한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통계학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국가 내 정치범 및 고문 회수와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상관관계의 영향력은 높지 않은 것이나,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발전수준과 인권침해 규모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아닌 곡선(curvilinear) 관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즉 경제성장과정에 있는 반주변부 국가들에게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도의 빈곤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저항할 여력도 없다는 사무엘 헌팅턴의 논리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경제성장률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활용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통계적 모델을 검증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근대화이론들은 주목은 받아왔으나 통계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반면, 절대빈곤이론은 인권침해상황을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하다는 평가이다. 인구규모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수들을 활용한 인권침해 상황연구들의 경우에도 경제적 설명과 유사한 맥락, 즉 희소성과 물질적 경쟁과 관련지어 개발되었다. 인구증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기구 및 자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인권침해정도가 더 높다는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콘웨이 헨더슨(Conway Henderson)에 따르면, 인구증가국가들은 경제성장 결과를 잠식해 버림으로써 국가의 노력을 좌절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양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지 못

하였다.²³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인권이라는 점에서 ‘빈곤’은 ‘민주주의’와 같이 인권침해 상황을 예견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독립, 종속 변수 간의 혼란을 가져온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요소들을 분명하게 분류하는 것도 어렵다.

(4) 이념적, 심리적 요인과 인권

특정 사회집단을 비인간화하고 폭력사용을 보복 혹은 정의구현의 수단으로 홍보하는 극단적인 정권이념은 인권침해와 연계되어 있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집단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하도록 하는 심리적 조건들은 사회심리연구의 관심주제이다. 인권침해상황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피해자의 비인간화(dehumanization)이다. 언어나 혹은 이미지로서 비인간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심각하고 끔직한 인권침해상황들은 체계적으로 특정집단을 악마화하고 비하하는 정권 하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과 그들(내부-외부집단)’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강화되고, 잔인성을 영웅주의, 신성한 의지로 인한 사회정화, 정화살해 등과 동일시하는 폭력의 미화를 가져왔다. 레오 쿠퍼(Leo Kuper)는 비인간화 이미지는 인권침해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수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집단은 악마, 짐승, 대상, 질병, 잡초, 곤충 등으로 비유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회적

²³ Mayra Gomez, *Human Rights in Cuba, El Salvador and Nicaragua: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buse*, pp. 33-37.

²⁴ *Ibid.*, p. 38.

I
II
III
IV
V

책임 영역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고구조에서 살해 및 인권침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이념적 구성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념적 요소들은 다른 어떤 변수들이 극단적인 이념 혹은 정치적 운동을 촉발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은 매우 일상적인 이유로 살해와 상해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은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개인의 책임감이나 감정들을 약화시켜 왔다. 더욱이 폭력은 증폭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잔인한 형태로 변화되어 심리적 무감각과 습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설명할 수 있다.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폭력가해과정에서 권력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권력자에 의해 독려될 경우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주는 활동에 쉽게 공모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책임감이 희석되며, 둘째, 권력자에 대해 특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보다는 권력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을 유보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접촉할 수 없는 재판과정 등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강화된다.²⁶

나. 국제적 요인과 인권

(1) 안보위협

국가가 개인 존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도록 추동할 수 있는 주된 인센티브의 하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특히 무장 집단

²⁵ *Ibid.*, p. 39.

²⁶ *Ibid.*, pp. 78-79.

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할 때)이다. 국가가 개인존엄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선도적 조건의 하나는 분명히 무력충돌이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국내적 인권압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개인의 존엄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안보위협에 대응한다.²⁷ 많은 경우에 ‘국가안보위협’은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한 명분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실제 특정국의 인권실태에 미치는 효과는 위반의 비용, 순응의 인센티브, 국제규범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 3가지 변수와 연계되어 있다.²⁸

국제규범에 대한 국가의 위반은 국가기구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인권위반 친화적 유권자(pro-violation constituencies)의 지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집단들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거나 국제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득(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규범위반에 연관된 정책을 위해 로비하거나 동의하게 된다. 특히 국가안보위협이 위반 친화적 유권자들을 동원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위협이 다양한 위반 친화적 집단의 이익(강압적 기구의 존재 이유와 경제엘리트의 복지를 포함)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권집단의 이익의 향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위반 친화적 집단에 의존하는 국가 엘리트들은 국제규범을 위반할 강력한 국내적 유인을 갖게 된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친화적 유권자의 실제적 역량은 정책결

²⁷- Sonia Cardenas, “Norm Collision: Explaining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on State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No. 2 (2004).

²⁸- 국제인권규범과 압력이 영향을 갖는 정도는 순응의 유인(pull of compliance)과 규범 위반의 배출(push of norm violations)에 의존한다. *Ibid.*

I
II
III
IV
V

정에 대해 이들이 제도화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순응은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가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에 위반 친화적 유권자들은 덜 민주적 체제에서 번성하게 된다. 정권의 유형이 경쟁적 유권자 사이의 분쟁이 폭력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등 국내적 갈등해결에 관한 실질적 절차를 반영한다.²⁹

국내적 예외(배제)의 규칙(rules of exception)은 국가가 하나의 규범 틀을 다른 규범 틀로 교체할 수 있는 조건과 언제 국제규범이 위반될 수 있는지를 특징짓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외의 규칙은 공식 헌법과 비공식 신념체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예외의 규칙은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정당화를 구할 때 표면화된다. 국가위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보다 큰 국가적 선(national good)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오염은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핵 확산은 국가 생존의 대가이다. 무역 보호는 지역 노동의 복지에 통합되어 있다. 화폐 간섭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보증한다. 예외의 법칙은 오래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존엄을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국가헌법은 정권으로 하여금 민족국가의 안보나 통합성이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의 경우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국가경제 목표, 국내정치질서, 영토 통합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강압(state coercion)은 사회적 통제의 기본 형태이다. 중요한 것은 주도적 사회집단이 다른 것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개인존엄의

²⁹ *Ibid.*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외의 법칙은 배제나 혹은 차별의 특별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치에서조차 이러한 규칙이 기본권의 유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국가가 강요하는 특별한 내적 집단에 대한 배제는 핵심 유권자의 신의와 통합을 재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강력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덜 동등하다고 보는 곳에서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을 차별하고 광범위한 집단(반체제 인사, 비시민, 원주민, 소수자, 어떤 이데올로기의 신봉자, 종교집단, 일정 성적 지향자, 성, 연령, 사회의 경제적 주변부에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위반하도록 무대가 설정된다. 예외의 법칙은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 특정 역사적 순간에 만들어지고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칙들은 사리사욕(self-interest)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외의 규칙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을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안보와 경제적 인센티브가 변할 때만 변화한다. 따라서 국가안보 위협이 사라지거나 국가가 현존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장집단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면 국가 억압에 따라 계속된 위반에 대한 논거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무장 갈등이 비무장화될 수 있다. 국가안보 맥락이 일단 변화하면 위반 친화적 유권자들은 지속적인 위반의 경제적 비용에 의해 동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정권의 사회적 연합이 붕괴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다. 무대는 순응 친화적 유권자가 보다 심화된 규범 변화(아마도 정권변환)를 추동하도록 설정된다.³⁰

³⁰- *Ibid.*

I
II
III
IV
V

(2) 인권감시제도

모니터링 구조의 존재여부는 인권침해 양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³¹ 모든 복합적 인간활동은 상이한 사람들을 조정하는 일종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내부 모니터링은 주체와 모니터 수행자가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한 활동 브리핑을 제공할 때 높다. 낮은 내부 모니터링은 빈약한 조정으로 나타나고 관련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개인 목적을 위한 높은 정도의 부패와 강압은 낮은 내부 모니터링을 지칭한다.

두 번째 정보 수집 메커니즘은 외부 모니터링인데 지도자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체제이다. 외부 모니터링의 수준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이 존재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내용이 법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독립적 언론 보도에서도 사실이다. 외부 모니터링은 미디어가 자유롭고 효과적일 때 보다 높다. 행정부의 강압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적 감독의 정도가 외부 모니터링의 중요한 지표이다. 외부 모니터링은 법정이 효과적이고 행정부의 강압적 활동의 모든 관련 측면에 대해 완전한 관할권을 가질 때 높다. 외부 모니터링은 외부인(outsider)이 죄수에게 주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높다. 또한 모니터 수행자의 보고서에 대해 책임자가 갖는 신뢰정도도 유용한 지표이다. 외부 모니터링은 정보입법의 자유가 행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외부인에 의한 폭넓은 접근을 허용할 때 높다. 내·외부 모니터링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2가지의 상이한 조합이 가능하다.

³¹-Pablo Policzer, "How Organizations Shape Human Rights Violation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223-225.

높은 내부 모니터링과 낮은 외부 모니터링 상황은 최고 행정지도자가 강압주체의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런 정보가 행정부 외부에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관료적 강압(bureaucratic coercion)으로 위계상 최고지도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관료적 강압에서 높은 내부 모니터링으로 지도자는 자신의 주체(대리자)를 신뢰하게 되며, 대리인들은 질서를 따르고 침해를 보고하게 된다. 낮은 수준의 부패와 조직의 부서 내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외부 모니터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가 내·외부에서 독립적 권력 중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많은 자원이 복합적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복합적 조직을 만들게 되면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그를 배신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측이 점수가 낮은 맹목적 강압('blind coercion')으로 지도부나 어떤 집단이나 제도도 강압적 주체의 활동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의 주체는 내부 감독자나 외부집단에 대한 책무성 기대를 갖고 활동하지는 않는다.

반면 투명한 강압('transparent coercion')은 주된 그리고 기타 조직과 집단이 강압적 주체의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정보는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온다. 많은 수의 행위자와 조직이 모든 강압적 활동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경우이다. 영국이나 캐나다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투명한 강압은 상이한 흥정의 세트를 제공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조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관료제를 만드는 비용이 독립 집단 조직, 제도적으로 증가된 외부 모니터링 역량에 의해 완화된다. 투명

I
II
III
IV
V

한 강압에서는 강압적 대리인의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투명한 강압은 독립조직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행동에서 보다 많은 제약에 직면한다. 맹목적 강압은 극적으로 반대 종류의 흥정을 낳게 된다. 외부원천으로부터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제약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내·외부 어떤 원천으로부터 대리인의 활동에 관한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무시는 자신의 대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 지도자에게 유용하다. 대부분의 강압적 활동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맹목적 강압에서는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활동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숨바꼭질식 강압('hide and seek coercion')은 외부 모니터링 점수는 높고 내부 모니터링 점수는 낮은 경우인데, 강압적 주체에 대한 정보가 상이한 집단들에게 널리 유용한 경우이다.³² 누구도 활동 자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사려 깊게 감독을 행사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활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했는지를 점검하는 지도자의 메커니즘은 외부인의 보고서로만 자신의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 살해된 사람 수와 같은 강압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보다 상세한 정보는 획득하기 어렵다. 강압적 주체는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외부 모니터링 원천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려 하고 하는 경우이다. 숨바꼭질식 강압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대리인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내적 지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임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의도한 대상이 체포 혹은 살해되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둔다. 나아가

³². *Ibid.*

이것은 외부 모니터 수행자의 보고서에 의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3) 대외원조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외정책 추진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을 주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외원조 시 특정국 내의 인권상황을 감안하고 있다. 기존의 사례연구들은 해외원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대외원조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대외원조와 국가억압 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이 검증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대외원조가 수원국의 인권상황 개선에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대외원조의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국가가 수원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제적 정책의지가 확고한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원국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근거로 지원이 철회될 것이라는 인식을 실제로 갖지 않으면, 실제 대외지원의 인권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게 된다.

대외원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상황’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인권이 주요한 고려요소로 설정되어 있으나 인권상황이 열악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권상황이 나은 지역보다 대외원조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대외원조를 분석한 연구도³³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대외정책결정자들이 인권 열악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할

I
II
III
IV
V

수 있다면 그들 국가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의 무역관계 비중이 평균보다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상황이 해외원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국가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무역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권상태가 지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설과 다르게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사례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외원조를 결정할 때 수원국의 인권실태가 감안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결정과정에서 인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 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³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두 금융기구들은 인구규모가 많은 국가 및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에 대한 차관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대외분쟁에 관여된 국가에 대한 차관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제통화기금은 민주적인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자유경제정책 실행에 반대하는 국내적 저항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국가가 세계금융기구의 구조조

³³-Bethany Barratt, "Aiding or Abetting: British Foreign Aid Decisions and Recipient Country Human Right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43-62.

³⁴-M. Rodwan Abouharb and David L. Cingranelli, "Human Rights and Structural Adjustmen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127-141.

정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는 두 금융기구의 주요정책 목표인 경제성장에 노동권 존중이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리 존중은 신체적 존엄권(physical integrity rights)과 연계되어 있다. 구조조정차관 결정과정과 수원국의 인권실태 간의 상관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며,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인권상황이 구조조정차관 결정과정에 감안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이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 군비거래

군비는 특정국이 안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개도국에 대한 군비이전은 국방력 강화로 이해되어 왔다. 국제관계에서 군비거래는 힘의 조정자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국내 구조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⁵ 군비 획득은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도국 내 민주적 제도 및 관행을 약화시키게 되며, 군비예산은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블랜톤(Blanton)은 사례연구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군비이전과 국가 내 개인권리 침해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³⁶ 군비획득은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보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억압상황을 초래하게 한다.

³⁵- Dawn Miller, "Security at What Cost? Arms Transfers to the Developing World and Human Right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63-77.

³⁶- *Ibid.*

I
II
III
IV
V

군사무기는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도구로 작용하거나, 혹은 군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억압을 초래하는 국가안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정의 목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밀러(Miller)는 사례연구를 통해 블랜턴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군비이전이 인권침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비이전이 특정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무기 생산은 특정국 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외무역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크게 자유주의와 극단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무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생존권과 개인 안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무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내 생산과 구분되어 국제 경제거래를 통해 새로운 자원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통해 확보된 소득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구매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생존권의 향상을 의미한다. 안전권과 관련해서 무역증가를 통한 자원과 소득창출이 제3세계 국가 내 자원 부족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정권이 국가권력 유지를 위해 억압적인 제도를 취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무역규모의 증대로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국제사회가 중요시 하는 가치인 인권존중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증대는 기본적인 안녕과 신체적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된다. 반면 국제경제질서를 불평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는 국내 생산품과 해외생산품 간의 경쟁이 이주자 및 여성노동자, 토착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생존권과 안전권을 저해하며, 선진국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무역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노조설립 등 제3세계 내 민주적 개혁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과 인권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사례연구는³⁷ 특정국가의 무역 규모 증대가 경제개발을 가져오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무역이 인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접근 차원에서 살펴보면, 모든 요소가 인권에 대해 단일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무역은 안전권과 생존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수입과 수출은 모두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영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수출과 달리 수입은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존중을 위해서는 수출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무역과 인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이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 실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정권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처리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발전이 안전권에 미치는 혜택은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이다. 대체로 민주국가들이 높은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

³⁷- Rhonda L. Callaway and Julie Harrelson-Stephens, "The Path from Trade to Human Rights: The Democracy and Development Detour,"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87-105.

I
II
III
IV
V

이고 있으나, 무역이 이러한 상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검증되지 못하였다.

다. 제반요인 간 상관관계

신체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생존권 등 다양한 분야별 인권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권개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작업이다. 주요 기본 권리들이 규범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불가분(indivisible)의 관계에 있다는 이론적 주장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³⁸ 실제 실증연구를 통한 상관관계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도넬리는 국가가 생존권 실현을 위해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등 실제로 권리 간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s)’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트레이드오프’ 현상도 양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슈(1980)는 생존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신체적 안전권과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적당한 수준의 인간존엄에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체계가 유용한지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연구들은 군사비 지출 및 기타 군사관련 변수들과 기본인간필요 제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군사정권은 국가의 신체적 삶의 질 제공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정부 내 조직 효율성은 잠재적으로 기본

³⁸- Steven C. Poe and Kara Smith, “Providing Subsistence Rights: Do States Make a Difference?”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pp. 110-126.

필요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군부가 근대화의 핵심세력으로 작용한다는 이론도 있으나, 군부에 우호적인 정권은 소외계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국가자원을 유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내 제도적 장치가 국민들의 기본필요 제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적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고 있다. 좌파 정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본인간육구 충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존엄과 관련된 신체 안전권과 생존권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다만 개인의 신체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침해는 국가전체의 안전과 기본인간육구 제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도넬리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어 권리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를 통해 신체적 안전권과 생존권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실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론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 존엄권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게 허용하는 국가들이 더 나은 생존권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존권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국가의 경제적 변수들이 포함되자 신체적 안전과 생존권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권리들 간의 상호 강화작용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권은 자유권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보장될 수 있다. 자유권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권이 저하되는 요인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은 사회적·문화적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통해 정부에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I
II
III
IV
V

나은 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식량, 건강, 노동, 교육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공공 논의에 참여할 시간과 능력을 갖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의 하나는 참여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참여 권리의 보장은 여성, 종교, 언어 혹은 인종적 소수자, 원주민,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또 다른 요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 적절한 생활수준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손상은 종종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거부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에서 일어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위한 활동은 개인의 자유와 안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가 없다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³⁹

³⁹- Allan McChesney, *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Handbook*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00), pp. 21-23.

Ⅲ.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 요인



1.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논쟁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요인에 대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크게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대변될 수 있다. 북한체제의 국가 지상주의적 속성에서 북한인권문제의 기원을 찾는 내인론과 북미대립, 냉전의식 등 체제외적 요인에서 문제의 발단을 보려는 외인론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권리 침해의 원인에 대한 진단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원인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및 정권의 차별적 식량배분 등 체제적 속성에서 식량난과 사회권 저하의 원인을 찾는 입장이다. 즉, 내인론자들은 사회권 저하의 원인에 대해 북한경제의 폐쇄적 속성과 차별정책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심각한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한 본질적 책임이 북한당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전적 국가의 실패 위에 시장의 실패가 겹쳐짐으로써 북한주민의 사회권이 극도로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정권의 영속화를 위해 체제에 부담을 주는 경제개혁이나 국제사회와의 경제교류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회권이 저하되었다고 북한당국 책임론을 제기한다.

반면 내부적인 모순과 함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 및 비우호적인 국제환경,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제기되어 왔다. 서방의 경제제재, 사회주의권 무역의 붕괴 등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려는 견해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지만 미국의 대북

I
II
III
IV
V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한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북한당국과 함께 북한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미국 등 국제사회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자유권의 침해 원인에 대한 진단 문제이다. 먼저 내인론자들은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북한주민의 자유권 유린 요인을 찾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자유권은 수령 독재체제로 인해 유린된다는 입장이다. 즉, 내인론자들은 북한인권 문제 발생 원인을 북한체제의 속성에서 찾고 있다.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모습에서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이 주장에 의하면 인권문제의 발생 근본 요인은 국가의 실패에 있게 된다. 반면, 외인론자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다양성을 ‘체제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서 특정분야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체제라는 극히 단선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북한 인권 유린의 복합성을 놓치게 되고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이 열악해진 원인에 북한정권의 책임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지만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해진 원인을 북한체제로 환원할 경우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정권 타도가 북한인권 개선 방안이 되는데,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을 악화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 발생 원인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하며 체

제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체제에서 인권문제가 비롯되었다는 체제론의 입장과 국제질서의 적대적 정책으로 북한이 고립되고 군사화되면서 개별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졌다는 환경론의 비생산적 이분법을 지양하고 북한인권 상황의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즉 외인과 내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북한인권 악화의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북한의 현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인권침해는 전혀 해소될 수 없는가? 서방의 경제봉쇄 조치와 이미 20년이 지난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외인론’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따라서 북한인권 악화 요인을 내인과 외인론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준의 침해 요인과 구조적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내적 요인

가. 정치적 요인

북한체제 자체의 정치구조와 통제시스템이 북한인권 유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 보존·확대라는 근본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 국가체계 및 공권력의 유지·강화,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게 된다. 구소련이 폭력과 공포 그리고 정치적 설득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

⁴⁰ 김수암, “북한인권 논의의 현황과 과제,” (민화협 세미나, 2009.8.25);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pp. 196-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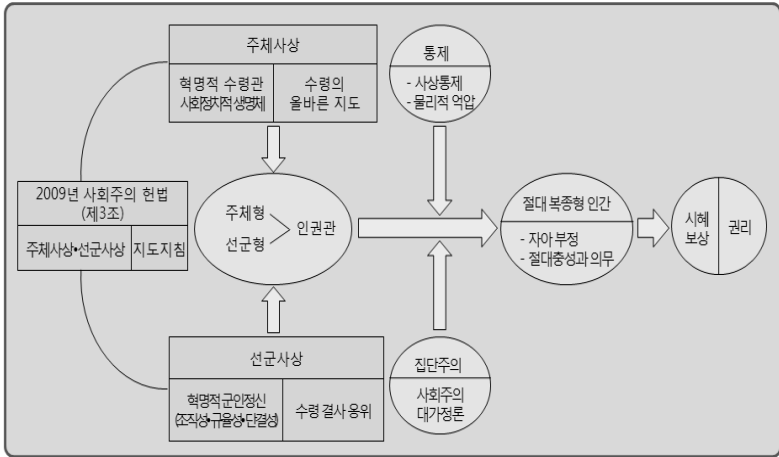
I
II
III
IV
V

배를 관철시켰던 것처럼 북한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지배를 관철시켜 왔다.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는 수령(상징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당·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인 중심의 지배체제를 공고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상통제와 물리적 억압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착취와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정치적 요인은 1990년대 중반이후 악화된 경제난 및 북한사회 내에 구조화된 반인권적인 인식 및 가치와 함께 열악한 인권상황을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추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수령 중심의 절대 충성을 강제하는 지도이념으로 인해 절대충성과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 대가로서 권리가 시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는 충성과 의무 이행에 따른 시혜로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아래로부터 자아 및 권리인식이 싹틀 수 없게 되어 있다.

⁴¹ 김중욱,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새로운 모색: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7집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pp. 176-177.

그림 III-1 수령체제와 인권



(1) 주체사상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인권개념에 주체사상을 결합시켰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권해석은 북한에서 억압적 지배를 낳고 인권인식이 싹트기 어려운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이 인권에 결합될 경우 인권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특수한 인권인식은 1990년대 김정일에 의하여 보다 확고하게 정립되고 있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⁴²

4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7.

이러한 김정일의 개념 정의에 입각하여 북한학자들은 보다 정교하게 주체사상을 통해 인권을 해석하고 있다. 첫째, 인권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이다.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이다. 정치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주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주적 권리라는 북한의 인권개념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라는 권리와 함께 ‘역할’이라는 의무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⁴³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역할, 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어 수령과 인민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생명체로 간주하면서 수령 독재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따라서 역할론에 따라 권리 개념에 접근할 경우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혁명적 수령관은 지배자에 대한 절대 복종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왔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뇌수로서의 수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혁명의 완수는 주체사상에 충실한 인간과 계급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로 비약되고 있다.

인권개념이 주체사상과 결합됨으로써 유일사상체계의 하위개념이나 반영물로 전락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결합될 때 혁명적 수령관으

43.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37-38.

로 인해 인권개념은 수령의 시혜로 정립되는 동시에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하게 된다. 개인은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인권을 보장받게 되는 수령의 선물과 시혜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권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령이 시혜로 베푸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권리인식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유일사상 10대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 사회정치적 생명을 획득하고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체제 보호논리로 귀결하게 된다. 이러한 시혜에 입각한 인권정책은 인덕정치와 광폭정치가 주민의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하는 정치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인덕정치가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덕정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덕성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인덕정치를 베풀 때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대외적 고립의 상황 속에서 1990년대 등장한 인덕정치는 북한이 체제위협에 직면하여 대중통합 혹은 동원을 위해 강제의 방법이 한계에 이르러 동의 기제를 개발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인덕정치에 따라 최고지도자의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게 될 경우 유일지도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배제된 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편적 인권 규범이 체제에 대한 한계설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 자체도 소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I
II
III
IV
V

(2) 선군사상

김정일 시대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선군사상이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선군정치도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을 제약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부가 정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권의 폭력사용이 증대된다. 그렇다면 선군정치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혁명적 군인정신이 북한당국의 인권인식과 정책, 북한주민의 권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선군정치에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아래 혁명을 주도해나가는 정치적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전당과 온 사회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배우는 기풍이 발휘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가 고도의 혁명성을 지닌 정치적 역량으로 준비되도록 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혁명군대는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 단결력이 특징이다.⁴⁴ 이와 같이 조직성, 규율성, 단결력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일반주민에게 확산시킨다는 선군정치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아 인식이 싹틀 여지가 없다.

특히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군대를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확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인권인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군정치 아래 인민군대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수령

44.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75-81.

의 군대로,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양성하여 수령의 군대가 된다. 이를 위해 혁명적 군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수행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혁명정신이다. 수령은 사회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위업을 성취하자면 혁명 최고뇌수인 수령을 결사 옹위해야 한다는 수령결사옹위의 핵심 요소가 바로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전당과 온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할 선군시대의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즉,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을 걸고 옹호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충성논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의 높은 충성심, 조직성, 규율성, 단결력을 따라 배워 그들이 인민군대처럼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인민대중의 무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절대 복종의 인간형을 지향하게 된다.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자는 기풍 및 수뇌부 결사옹호가 절대 복종 정신을 강제하고 개인의 권리 및 자아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집단주의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혁명 전통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성격이 혼합되어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북한은 1998년에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서

문에서 개정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하고, 주석직을 폐지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주창한 주체사상을 주민들의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권위는 과거 유교사회와 같이 지도자의 우월한 도덕성에 기초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북한당국은 유교적 전통을 충분히 활용하여 김일성과 후계자인 김정일의 권위에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대한 공경을 위해 집단주의를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배제해 왔다. 또한 ‘충효’를 상하관계의 근본으로 강조하여 활용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 후계자인 김정일의 북한지배는 전통적인 집단의 가치와 태도 및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이 미덕으로 칭송되고,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가 강화되고 있다. 충효사상과 가부장적 가치관, 가족주의, 혈연중시 등 유교적 전통을 이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 전통을 지도자의 권위 강화에 활용하는 논리가 사회주의대가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라는 2차 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기와 효자동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족질서와 조화를 정치적 권위 강화에 활용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욱 경직된 형태의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과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 제63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집단의 이익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생관과 달리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상위에 설정하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온 사회가 하나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대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서는 양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섭게 배척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집단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집단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사회주의대가정론이라는 가부장적 사고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일반 인식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평등관을 정착시키는 데 제약

I
II
III
IV
V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위계적 사회질서와 결합되어 권리의식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봉건적인 북한 특유의 사고방식은 인권이 북한주민의 자각과 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과 당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왜곡, 인식될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인해 인권은 법적·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보장되기보다 지도자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도자의 시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은 자신들의 사상은 물론 생활 전 분야에서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수령과 당이 주는 인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무는 적극적·1차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권리는 의무에 파생되는 소극적·2차적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인권·권리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4) 유일지배체제

김일성은 집권 후에 일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숙청하고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수용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제거하여 왔다.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대가정론에 입각하여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충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

⁴⁵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 2007), pp. 146-147.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에서는 종교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단정하고 있다.

1998년 사회주의 개정헌법에서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개정하였다.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종교 건물을 건축과 종교의식의 2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건축과 종교의식도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관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평양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러시아 정교 사원이외에 종교시설은 없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것 이외의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둘째,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없다는 점은 유일지배체제와 연관이 있으며, 전교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교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사회주의 사상과 유일지배체제가 와해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침투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해 이를 방어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상이 종교와 결합하여 침투할 경우 북한체제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2005년 7월 발행된 <강연제강>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내부에 종교를 퍼치려는 적들의 음흉한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라는 제목에서 종교가 미칠지도 모르는 파급력에 대한 경계심이 잘 드러나 있다. 북한 당국은 종교를 “<국가제도전복>실현의 수단”이자 “민족

I
II
III
IV
V

의 자주권 침해” 및 “인권유린”으로 인식하고 있다. 순수한 종교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자들의 충성 없는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절대자인 신(神)을 믿게 되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변질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종교침투 행위를 막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수뇌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심각한 사상적대결전”으로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 자유의 허용’ 문제가 북한 땅에서만은 당국의 사활적 가치인 체제유지 문제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종교가 개인승배에 배치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종교자유를 허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북주민들의 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선교사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경을 소지한 경우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 내에서 인도적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국가의 배급체계에 의존하다 장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해 점을 통해 알아보려는 욕구가 확산되면서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점을 보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북한당국은 단속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형법 제268조(미신행위 조장죄)에서 “리기적 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많은 사람에게 하였거나 대

⁴⁶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6호 (2006.4.14).

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억압기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요소는 수령체제이다. 이러한 수령체제를 뒷받침할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사회주의대가정론이라는 정당화 논리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대충성에 반하는 사고가 싹트지 못하도록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절대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하여 온 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존재를 절대화하는 것으로 이들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요하고 주민들의 권리인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상통제의 핵심 요소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다. 그리고 각 가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초상화를 걸어두고 청소를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총화에서는 유일사상 10대원칙과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고 비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10대 원칙이 권리인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10대 원칙 자체에 대해 북한주민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조직생활을 통해 각종 근로단체들은 직장, 세대, 계층, 남녀의 구분에 따라 전문적인 조직단위를 이루게 되며, 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I
II
III
IV
V

움직이게 된다. 북한주민들은 상급당 → 근로단체 → 조직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당 통제와 당 → 행정조직 → 주민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통제의 낯설고 씨실로 엮힌 조직적 통제망에서 생활하게 된다. 조직생활로는 금요노동, 수요강연회, 토요일학습 등이 있으며, 모든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질서 및 일상적인 노력동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가치관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함으로써 권리인식이 싹틀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⁴⁷

어느 체제이든 질서를 위해서 국가는 물리적인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리적 수단의 동원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주민 통제를 위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주민들의 사회, 정치 및 사생활의 영역까지 그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 처벌도 정당한 절차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의한 비인도적인 처벌이 다반사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 결합된 절대충성에 대한 시혜로서 인권에 접근하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통제와 물리적 억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권리인식이 싹틀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인권유린 방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은 유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한 권력체제를 통해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사회로 형성하려 하여 왔다. 당의 유일 사상체계로 대표되는 사상적 통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통제

47. 정영철,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 117-118.

가 사회통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수령·당·대중의 동심원적 사회구조의 형성은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 교양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천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사회통합 질서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여 왔다.⁴⁸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위해 물리적 억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당,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이다. 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당원들은 주민들의 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동원하는 핵심기구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등 반혁명 세력, 정치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며,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일상생활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강제성에 기초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이 만연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질서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수행하는 기구로 검찰소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또한 탈북자들은 ‘비사회주의그루빠’라는 초법적 조직이 감찰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분 아래 체포와 구금, 형벌, 숙청 등을 단행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에 대한 물리적 억압 역할을 담당하는 강권 기관 집행자들의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리적 억압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비밀감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⁴⁸ 위의 글, pp. 113-114.

I
II
III
IV
V

특히 공권력에 의해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억압 제도로 압행감시망이 운용되고 있다.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당 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서 운용하고 있다. 정보원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원이 아니라 일반주민 중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 중에게 비밀리에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누가 정보원인지 서로 알 수 없다. 주민통제를 위한 최일선 감시조직은 인민반이다. 인민반에 의한 일반주민의 생활공간에서의 감시가 여전히 일상화되어 있다. 인민반장은 매일 아침 동사무소에 들러 상부에 주민 동태를 보고한다. 또한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도서 검열 등을 통해 감시·통제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이탈주민들이 늘어나자 인민반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7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윤○○은 본인의 어머니가 인민반장이었는데, 지시사항을 받아 인민반의 동태를 감시한다고 한다. “도강 같은 건 하지 말고 집에 또 왜 다른 사람들이 숙박하면 숙박도 제대라 하라 뭐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엄정할 때는 문건으로 내려오고 또 그 외 사항은 말로 전해주고 그런다”라고 증언하였다.⁴⁹

이와 같이 일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인권 유린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에 의한 억압, 협박 및 광범위한 정보체계 등 주민들의 신변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등으로 인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 당하고 있다. 특히 외부정보 유입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외부정보가 유입될 경우 비교 관점에 의해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이것이 일인지배체제의 허구성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기본

⁴⁹ 북한이탈주민 윤○○, 2009.6.3 면접.

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고정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해외 신문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해외 언론의 취재도 허가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고 있다. 2004년 용천폭발사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전면 중단시키고, 중국의 휴대폰을 반입하여 외부와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지속하여 왔다.

외부정보에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탈북 행렬 확산과 생존을 위한 이동 확산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외부정보에 접하는 행위가 확산되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국경지역 등 일부주민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한국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방송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95조(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에서는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뼈라, 사진, 록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담은 CD 유통이 확산되자, 북한당국은 비사그루빠 등을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각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특히 CD 등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다 발각될 경우 교화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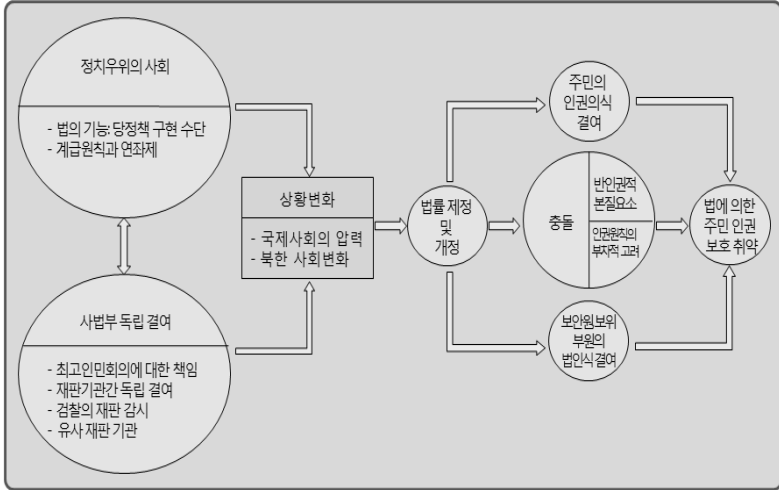
I
II
III
IV
V

이와 관련하여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죄’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9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에서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유연성자 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 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9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서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핸드폰이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사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기지국에서 전파가 미치는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중국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핸드폰을 통하여 북한 내의 상황이 외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하여 외부의 정보가 신속하게 유포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전파탐지기 등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교화소에 보내지기도 한다. 최근 비디오나 CD 시청,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당하면 단속자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뇌물 구조로 인해 돈이 없는 경우 처벌 됨으로써 동일한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나. 법·제도적 요인

그림 Ⅲ-2 정치우위 법·제도 및 인권



(1) 정치 우위 법·제도 운용

북한은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정치 우위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법은 정치의 표현으로 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사회주의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법에 대해 정치가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법치가 확립되기 어려운 본질적 제약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북한사회에서 법치에 대한 기본해석은 김일성의 교시에 기반을 둔다. 김일성은 “전국, 사법일군들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와 법의 기능에 대해, 법을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I
II
III
IV
V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 당의 령도를 떠나서 법에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복종하려는것이 아니라 법을 왜곡하자는것입니다.⁵⁰

법은 정치의 표현으로서 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당의 영도를 통해 법을 인식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노동계급의 당의 정책으로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⁵¹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정치의 규정’이라는 법과 정치와의 상호관계로 인해 법치가 확립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치 우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자의적 판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적 원칙에 의거해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치 요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직 법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립장에서 다시말하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립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라는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 우리는 법조문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떨어져서 법의 기본정신을 외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⁵²

김정일도 당적, 노동계급적 입장, 국가적 입장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³ 이로 인해

50.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21.

51.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 『근로자』, 제11호 (1985).

52.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p. 221-222.

53.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평양: 조선

법에 의해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법치의 상황은 지금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우위적 인식은 형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특히 형법의 사명에서 이러한 인식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1974년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제4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74년 형법에서는 주석의 보위와 주체사상의 일색화, 당 노선과 정책의 옹호 관철 등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 개정 형법에서는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제1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색채 대신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중심으로 개정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호가 형법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정치우위적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변

로동당출판사, 1996), p. 342.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우위 사회라는 사회주의 일반적인 특성은 수령 중심의 북한사회에서는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법이 정치에 대한 종속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말씀이 실제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개처형이나 인신매매, 불법영상품 단속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침이 처벌 기준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은 탈북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수령 중심의 북한사회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법치가 확립되기 더욱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2) 계급원칙과 연좌제

정치 우위의 북한사회에서 법의 역할은 형법의 사명에서 보듯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적용을 부인하는 대표적 원칙이 계급원칙이라는 배제의 규칙이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계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편적 가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천부인권론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특정계층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규칙이 인권보호 적용의 절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규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전체의 권리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권 제약논리이다.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

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⁵⁴

이와 같이 계급적 시각에서 인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이 부인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인권을 보장하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론적 인권개념은 북한 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헌법 제12조에서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개정된 재판소구성법에서는 계급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있지만 사회주의헌법의 재판소 임무에서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제156조)”해야 한다고 계급원칙이 견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규칙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조에서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조에서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원칙을 통한 배제는 범죄에 대한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

⁵⁴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으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와 유일지배체제, 특히 선군혁명사상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일반범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범죄행위가 반혁명범죄이다. 즉, 반혁명범죄는 사회의 혁명과 건설을 저해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⁵⁵

북한은 현 정세를 ‘반제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분자와 불순이색분자들에 대한 징벌의 도수를 가일층 높여갈 데 대한 문제, 군력 강화를 최우선시하며 이를 반대하는 현상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반역적인 행위로 보고 이런 현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데 대한 문제, 당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생활 원칙을 지킬 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법은 이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⁶ 사회주의제도와 전체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 보위하는 것이 형법의 계급적 본질이므로 이러한 계급적 본질로부터 반혁명범죄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기능에서 보듯이

55. 김근식, 『형법학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5.

56. 김은경,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공민적 의무,” 『정치법률연구』, 제1호 (2005), p. 31.

57.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p. 47.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찾아내어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혁명범죄(1974)가 반국가범죄(1987) → 반국가 및 민족범죄(2004) 형태로 범죄 명칭상으로는 변화하고 있지만 2004년 개정형법에서도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구분하는 인식과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범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인권의 보편적 보장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권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이러한 계급적 원칙에 따른 배제의 규칙이 반영된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원칙은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라는 형태로 천부인권론을 부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와 일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차별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을 3계층(핵심, 기본, 복잡군중)으로 분리하여 통제하고 있다. 핵심계층은 지배 엘리트로서 특권(개인전화, 해외발간물 소지가능)을 향유한다. 기본계층은 식량배급을 받지만 당국의 시장경제 실험과 식량배급체계 축소로 배급량이 감소되고 있다. 적대계층은 대학진학 불가, 주택,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요건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은 정권의 적대계층으로 간주되어 처벌과 소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차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에서 법치에 의한 차별이 아닌 인권유린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연좌제이다. 북한에서는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

I
II
III
IV
V

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동시에 수감되어 집안 전체가 파탄에 이르는 연좌제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자신만 처벌한다면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신으로 인해 가족까지 처벌되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한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증언한다.⁵⁸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북한당국은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분에 의한 차별은 대를 이어 북한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연좌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좌제는 강제추방에도 적용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특히 탈북행렬이 증가하고 남한행을 추진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함께 강제추방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3) 사법부 독립 결여

북한주민의 인권은 법률 자체가 보장하는 인권의 수준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법부의 위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해 다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입법과 비교하여 정부의 우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정부가 국가권력 실현의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와 그

⁵⁸ 북한이탈주민 김○○, 2009.11.12 면접.

수반인 대통령 혹은 수상에게 국회해산권, 법안거부권, 비상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가 행정부에 복속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뿐만 아니라 재판기관도 권력실현의 중추적 기관인 정부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정부수반에게 사법관 임명제청권, 사법관 임명권, 사법권 관할권까지 부여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 입법행위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한편 정부에 ‘위임입법권’ 등을 부여하여 정부가 입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중심주의는 행정권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입법권과 사법권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인 삼권분립 권력구조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은 서로 다른 계급에 의한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자본가계급 내에서의 통치의 분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을 계급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법적 독립이 법률적으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면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휴회 중 해당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상으로 볼 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재판절차를 통해 재판기관 간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직무관할이 불명확하다.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59. 박희철, “현대부르조아국가법의 반동적 특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0권 제1호 (2004), pp. 75-76.

I
II
III
IV
V

적 안정성 저해, 상소권의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급재판소가 일방적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판소 소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1심 재판소의 무죄판결 등에 의한 피소자의 석방을 일방적으로 집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비상상소와 재심을 통해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재판에 대해 검찰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감시법 제11조에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재판도 검사의 감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검찰의 감독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의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려면 검찰기관들에서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검찰기관들에서는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제기된 모든 사건이 당정책과 법적으로 맞게 정확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⁶⁰

넷째, 범죄행위와 일탈행위에 대해 재판소가 최종적 판결을 하지 못하고 다른 조직들이 처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판소의 위상이 훼손됨으로써 인권의 보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감시법 제36조에는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⁶⁰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p. 321.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0조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하려할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가 처벌을 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에 의하면 행정처벌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양하다. 행정처벌법 제175조에는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 부과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의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가운데서 재판에 넘길 대상은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대상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⁶¹

사회적 교양처분의 판단은 검사가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집행은 범죄자가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⁶¹ 위의 책, p. 319.

I
II
III
IV
V

(4)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

(가) 현황

정치우위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말씀과 지시가 여전히 사회를 통제하는 핵심기준이지만 의제의 상당부분을 법제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등 정비하여 오고 있다.

표 III-1 인권 관련 북한당국의 법 제·개정 현황

구분	제정·개정 현황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 보충 -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 보충 -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 보충 -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형법부칙(일반범죄) 채택
형사 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 1954년 6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1995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9호로 수정 보충 -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7호로 수정 보충 - 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5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96호로 수정 보충 -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 -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 보충

구분	제정·개정 현황
재판소 구성법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 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변호사법	-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판결판정 집행법	-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3호로 수정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 수정 보충
검찰 감시법	-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8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형민사 감정법	-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
사회안전 단속법	-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 보충
행정 처벌법	- 2004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6호로 채택
신소 청원법	-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보충 -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장애자 보호법	-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인권요소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첫째, 가장 특징적인 점은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권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헌법 제8조에서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보호의 대상을 구체적

I
II
III
IV
V

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편적 적용을 부인하는 배제의 규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1998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거주·여행의 자유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해석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치의 관점에서 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수용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0년 형법을 채택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추해석을 명시하여 왔다. 이후 1974년, 1987년, 1999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해석에 대한 자의적 적용가능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유추해석을 폐기하지는 않았다. 국제사회는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라고 집중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해 북한이 제출한 2차 보고서 심의 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유추해석 조항의 삭제와 죄형법정주의 채택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04년 개정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다. 유추해석을 규정하였던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신설·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절차에 인권적 요소를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일정 정도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우위에 대한 인식의 기본 틀은 2004년 개정형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범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개정형법에서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보호가 주된 사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색채 대신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중심으로 개정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보호가 주된 사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기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형사소송법부터 형사처리 과정에서 인권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도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의 원칙을 추가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변호사법, 검찰감시법, 판결판정집행법, 재판소구성법 등 형사처리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한 법률들을 정비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안전단속법, 행정처벌법 등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탈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신소청원법, 장애인보호법 등 구체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I

II

III

IV

V

(나) 실질적 효과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권 요소를 반영하여 오고 있는데, 법치의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법치와 인권보장의 효과와의 상관성은 각각의 요소에서 본질적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우위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항은 부차적 효과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핵심적인 기능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에 있는 한 인권조항은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우위의 사회에서 인권보장 원칙보다는 균중노선과 계급원칙이 본질적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형사소송법에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형사처리 원칙으로 고수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법을 통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인식이 형사소송법에 강하게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법률조문 상으로 구체적으로 비인권적 요소를 갖고 있는 제도가 현지 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재판 제도는 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당국의 법인식이 비인권적 측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재판 제도의 목적과 이러한 재판제도가 갖는 비인권적 성격은 김정일의 논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균중을 교양하고 각 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 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습

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⁶²

이러한 김정일의 방침은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현지재판의 조직)에서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재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의 방침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공개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개재판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 개인을 법률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변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로, 규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인권적인 제도이다.

셋째, 형법을 개정하여 인권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2007년 형법부칙의 채택을 통하여 후퇴하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사회 내에서 일반범죄가 증대하면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중처벌을 통해 사형을 확대함으로써 사형의 제한조치에 역행하고 있다. 2007년 형법부칙은 일반범죄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 내지 사형으로 처벌근거를 강화하여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⁶² 위의 책, p. 316.



있다.⁶³ 이와 같이 형법부칙의 채택에서 보듯이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본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처벌법에서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행정처벌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은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그렇지만 각종 강권기구들의 권한 강화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이 제약 당할 가능성이 높다.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들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비사그루빠의 감찰사업은 체포와 구금, 형벌, 숙청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 지배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강권기구와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⁶⁴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북한이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인권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인권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약하는 본질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국내 법률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 사법인력의 법인식 결여

위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법치가 제약되는 요인으로 인권을 제약하는 본질적 요소와의 충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못지않게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

⁶³ 박정원,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과 평가: 2007년 북한형법 부칙 채택과 관련하여,” (제144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2009.8.24).

⁶⁴ 김종욱,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새로운 모색: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을 중심으로,” p. 179.

어야 한다. 아무리 법률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기준에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보안원과 보위부원의 법인식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 집행자와 주민들의 법인식 수준으로 인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구류장에서 수사와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인권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형벌이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하는 폭력적 강제수단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자가 인권적 관점에서 태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를 하여도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부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인권개해자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에서 보듯이 폭력자체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북한 형법에는 법일군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 구인하거나 수색하였을 때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52조). 그렇지만 가혹행위에 대한 법일군 처벌 조항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형법 상 법일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일군은 성분이 좋은 계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에 대한 차별인식이 내재화되어 있다.

북한의 법일군들은 교화소 수감자를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전거리교화소에 수감생활을 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윤○○은 교화소 보안원이 처음 수감절차를 밟을 때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I
II
III
IV
V

“교화소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선생들이 그러더라. 야 오늘 너희 수매 되는 날이다. 수매라는 것은 공민권이 박탈되는 것이니까 짐승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너희 수매시키러 들어간다 그러더라.” 그리고 보안원과 수감자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선생들(보안원)이 주로 말하는 것은 ‘야 너희 뭐야?’ 하게 되면 ‘예. 우리(수감자)는 땅입니다’, ‘선생은 뭐야’ 하면 ‘하늘입니다’라고 한다. 선생이 부르면 마주 못본다. 얼굴 딱 숙이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이야기해야 한다.”⁶⁵

이와 같이 법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주민들도 법일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신소청원법을 제정하였고 북한의 형법 제250조에는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노동 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 제정된 행정처벌법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9조).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신소청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거나, 신소한 주민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오히려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2008년 9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김○○은 신소 제도가 인권보호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신소, 청원 다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디다가 청원 하나? 하여도 안 들어주거니와 신소를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65. 북한이탈주민 윤○○, 2009.9.29 면접.

그저 하나마나라고 인식하고 있다.”⁶⁶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신소는 대부분 무시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소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거는 도중에 다 소각되어 버린다. 내가 신소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도중에서 다 깎아버린다.”⁶⁷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에는 우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신소와 청원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국가인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신소와 청원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신소와 청원제도에 대해 역으로 신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신소와 청원제도를 통해 법일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호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신소와 청원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식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타고문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저항의식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의 법치 현실을 볼 때 법일군은 반인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북한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강제 송환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우리 조선의 법기관에 내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응당 그거는 맞으려니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다.”⁶⁸

66. 북한이탈주민 김○○, 2009.6.9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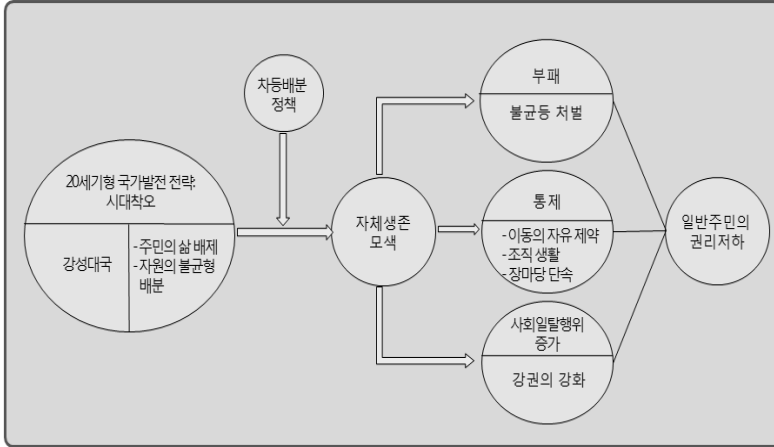
67. 북한이탈주민 심○○, 2009.2.26 면접.

68. 북한이탈주민 윤○○, 2009.9.29 면접.

I
II
III
IV
V

다. 경제적 요인

그림 Ⅲ-3 불균등 발전전략과 인권



(1) 20세기형 강성대국 개발전략

김정일 등장 이후 북한사회는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은 선군정치의 원칙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지침을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군정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은 19세기와 20세기형의 ‘부국강병’형 전략이다. 20세기에서 달성하고자 목표로 설정한 부국강병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발전전략에는 주민의 복지와 삶이 거의 고려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화로 예산의 불균형 편성이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이기 때문에 군사 분야(군대와 국방공법, 전쟁 등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 포괄)의 사업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이전보다 강화되게 된다. 이와 같이 선군정치 아래에서 군대강화에 우선적인 힘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군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군사역량 즉,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군사력 강화는 군대의 정치사상적 강화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공업 발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방공업 우선전략을 제시하는데 경제나 다른 부문과의 관계에서 국방공업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전략에 따라 자원이 편중 배분되고 개발과정이 불균등하게 진행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경제·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국민경제 비율을 감안할 때, 북한의 직·간접 군사예산은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할 만큼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사화를 추구하여 가용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군사화 정책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지원 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의한 자원의 왜곡 배분과 더불어 불균형 개발전략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사회권이 저하되고 있다. 비릿 문타본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소로 북한 내 불균형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⁶⁹ 먼저, 북한 개발과정에서의 공평성 부재로서 불공평(inequity) 요소를 들고 있다. 고도로 계층화된

⁶⁹ Vitit Muntarbhorn,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7/20, 2008.

I
II
III
IV
V

정치구조로 인해 정권의 정점에 있는 엘리트들이 개발과정을 주도하면서 일반주민들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생존 차원에서의 이념편향적인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불공평한 개발방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왜곡되고 지배엘리트에게 유리한 분배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2) 경제난

(가) 차등배분과 식량접근권

북한은 농업정책의 비효율성, 선군전략에 의한 자원의 왜곡 배분 등으로 인해 식량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주민의 식량권이 위협받는 것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차등적 분배정책에 기인한다.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일반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체계는 와해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대, 군수산업 등 체제보위 세력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관, 공장, 기업소가 외화벌이 등을 통해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차등적 식량배분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 표 III-2 배급 순위와 배급 상황

배급 순위	대상자	배급 상황
1순위	당·정 고급 간부, 군부(특별 배급), 약100만 명	정상공급 간혹 감량공급
2순위	보위부, 보안성, 사법검찰부문(직장에서 배급), 약150만 명	감량 공급
3순위	군수공업, 국영기업 종사자(기업에서 식량 공급), 약400만 명	군수공업은 비교적 정상공급 국영기업은 감량 또는 일정기간 무공급
4순위	일반 기업소, 교원, 서비스직 노동자(지역 배급체계), 약600만 명	배급 없음, 국경절이나 명절 때 2~3일분 공급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직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배급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 제4순위 계층의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약80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은 생산량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분 받는데, 농장에서 군량미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⁷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쌀을 비롯한 식량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쌀을 배급받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다.⁷¹ 대규모 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하역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타 지역 장마당에 까지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주민들의 식량에

⁷⁰ 법 료,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 기초발제, 2009.10.15).

⁷¹ 북한이탈주민 이○○, 2009.9.24 면접.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지원된 식량을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식량가격이 안정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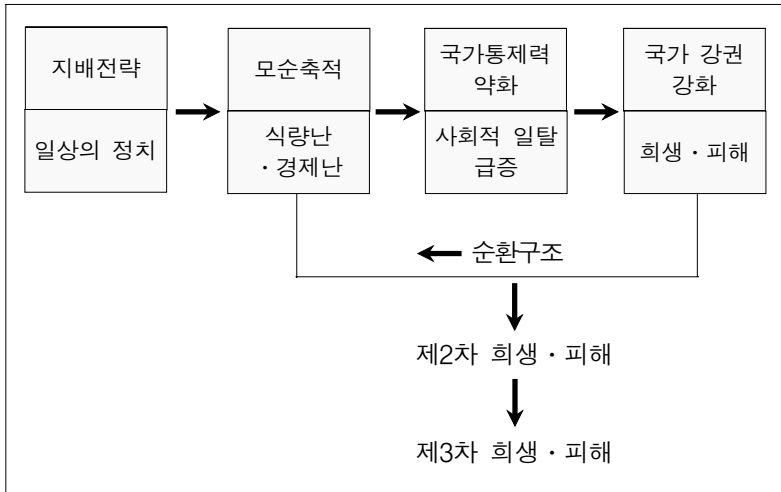
(나) 사적 거래 및 사회일탈행위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동의 약화와 사회일탈행위에 의한 비사회주의 요소의 확산은 북한당국에 대한 내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배급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통하여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적 동의 기반의 약화로 강권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권력의 강화와 법률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이는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수준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로 진입하게 되었다.

강권은 국가의 미명 아래 합법적 권한으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강권과 북한주민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식량난·경제난 → 국가통제력 약화 → 사회적 일탈 급증 → 국가의 강권 강화 → 희생·피해(인권침해)라는 순환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⁷² 북한이탈주민 이○○, 2009.11.3 면접.

● 표 III-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관리 순환구조



* 김종욱,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새로운 모색,” p. 177을 토대로 일부 재조정 하였음.

처벌권의 강화와 이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가능성 증대는 2004년 행정처벌법의 제정과 2007년 형법부칙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일탈 행위가 증대하면서 북한은 2007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총2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형법 부칙을 채택하였다. 경제난에 따른 자체 생존과 유동의 증가로 범죄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일반범죄의 증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의 범죄화에 대응하여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질서침해범죄, 사회주의 경제침해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또한 장마당 등 자체 생존의 확산에 따른 자본주의 사조의 유입은 사상적 일체화를 통한 일인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

I
II
III
IV
V

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 형법에서 5개 조항에 불과하던 사형 형벌에 대해 사형 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은 북한체제의 강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형법 부칙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체제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파괴, 국가재산약취·강도·파손, 화폐위조, 밀수·밀매, 전략예비물자 불법매매, 외화도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에서 국가질서 수호 의지를 볼 수 있다. 한편 범죄 행위의 확산은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범죄피해자의 불만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은 이를 차단하여 체제 불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량자 행위 처벌, 고의적 중상해죄, 유괴죄, 강간죄, 개인재산강도죄에 대한 가중처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형법 부칙 채택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위화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형벌의 강화 조치는 현대 형법의 인권보장,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교육형 형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⁷³ 이와 같이 경제난으로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증가하면서 체제이완을 막기 위한 국가처벌권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물리적 억압기구에 의한 인권유린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생존방식과 일상생활이 변화하면서 북한당국의 기준에서 사회일탈행위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에 직

73. 박정원,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과 평가: 2007년 북한형법 부칙 채택과 관련하여.”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사회일탈 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빙두(얼음)라고 불리는 마약 거래가 북한 내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국 농촌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 북한 내 경제난에 따라 북한여성이 생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탈북 유인의 발생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북한여성들이 브로커에 의해 팔려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발적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이러한 현상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2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경제난으로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면서 일반주민에 의한 다른 주민의 인권유린 행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량난 이후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혼란상황에서, 노인 및 여성 등 신체적 취약계층의 범죄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되거래 장사를 하기 위해 낯선 지역을 이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를 위장한 강력범죄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다.⁷⁴

둘째, 이러한 사회일탈행위의 확산에 대해 북한당국이 집중적인 강권의 사용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제약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범죄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개처형 등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들이 행해져 왔다. 식량, 유색금속 등을 국가재산

74. 북한이탈주민 정○○, 2009.4.13 면접.

I
II
III
IV
V

으로 규정하고 이를 절취하는 경우 국가재산절취죄로 엄벌하고, 시범적인 공개처형을 실시하여 왔다.⁷⁵ 북한당국은 이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무자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혼란이 체제이완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죄확산에 대한 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처형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개처형 현장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는 일반주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참관 주민들이 ‘죽여라’를 외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가족구성원 및 이웃주민 등이 사망하는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라. 문화적 요인

(1) 가부장적 문화

북한의 인권관에 영향을 준 북한 특유의 현상은 유일사상·유일지도체제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평등관을 정착시키는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북한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여성은 가정주부는 물론 아내, 혁명동지, 교양자라는 복수

⁷⁵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임순희, 최수영,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48-57.

의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북한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노동에 시달려 왔다.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 불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낳은 것이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부장적 사고이다.

가부장적인 반인권적 문화가 정권에 의해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구조화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여맹의 기관지인 『조선녀성』을 통해 끊임없이 바람직한 여성상을 제시하여 왔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왔다. 여성들에게 여성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지차림을 제약하여, 자전거를 탈 때도 바지가 아닌 치마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치안 부재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권력기관 및 군인들이 우월한 위치를 활용하여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식량난과 함께 여성의 신체가 생존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북여성들이 강제송환이후에 조사와 처벌과정에서 받게 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이러한 북한 내 여성비하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중국남성과 동거하게 된다는 현실을 일반화시켜, “조선을 더럽혔다”는 식의 사회적 낙인을 씌우게 된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임신한 상태에

76. 임순희, 『북한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 (서울: 해냄, 2006).



서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내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10개월 동안 형집행 정지규정이 준수되고 있으나,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부당한 관행에 대해 당사자인 여성들조차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송환된 임신상태의 탈북여성일 경우에도 상대 남성이 북한주민인 경우에는 강제낙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명백하게 외국인 남성과의 동거를 ‘국가적 수치’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여성비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 인권의식

개인의 권리인식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일면에는 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내부의 인권의식조사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및 입국이후 정착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형성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의 인식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115명에 대한 설문조사⁷⁷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할 때 귀하는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77. 전체 응답자는 2007년 입국한 남성 16명, 여성 9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해 이루어졌다.

31.3%, ‘들어 본 적이 없다’ 30.4%, ‘들어보았으나 관심이 없었다’ 27.8%,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7.8%,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 수단’ 1.7%, ‘모름/무응답’ 0.9%로 응답하였다.

● 표 III-4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구분	불가침 권리	들어 본 적이 없다	들어보았으나 관심이 없었다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내정간섭 수단	모름/무응답
전체	31.3	30.4	27.8	7.8	1.7	0.9
남성	50.0	18.8	25.0	6.3	0.0	0.0
여성	28.3	32.3	28.3	8.1	2.0	1.0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50%, ‘들어 보았으나 관심이 없었다’ 25.0%, ‘들어 본 적이 없다’ 18.8%,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들어 본 적이 없다’ 32.3%, ‘들어보았으나 관심이 없었다’,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각각 28.3%,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8.1%,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 수단’ 2.0%, ‘모름/무응답’ 1.0%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수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인권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당원여부별 차이를 보면 성별차이보다 더욱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중 당원이었던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66.7%, ‘들어 본 적이 없다’,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각각 16.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당원이었던 경우에는 ‘들어 본 적이 없다’ 31.2%, ‘들어보았으나 관심이 없었다’, ‘국가에 의해 침해



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각각 29.4%,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7.3%,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 수단' 1.8%, '모름/무응답' 0.9%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당원인 경우가 비당원과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해 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식량난' 29.6%, '공개처형' 22.6%, '고문' 19.1%,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18.3%, '이동자유통제' 6.1%, '통신자유통제' 2.6%, '없다' 1.7%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III-5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요인

구분	식량난	공개처형	고문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이동자유 통제	통신자유 통제	없다
전체	29.6	22.6	19.1	18.3	6.1	2.6	1.7
남성	0.0	18.8	37.5	18.8	12.5	6.3	6.3
여성	34.3	23.2	16.2	18.2	5.1	2.0	1.0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문' 37.5%, '공개처형',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각각 18.8%, '이동자유통제' 12.5%, '통신자유통제', '없다' 각각 6.3% 순으로 나타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을 '식량난(34.3%)'으로 지적하였고, '공개처형' 23.2%,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18.2%, '고문' 16.2%, '이동자유통제' 5.1%, '통신자유통제' 2.0%, '없다' 1.0%로 응답하였다. 당 가입 여부별 차이도 현격하여, 당원의 경우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을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66.7%로 응답하였고, '공개처형', '이동통신자유'가 각각

16.7%로 나타났다. 반면 비당원의 경우에는 ‘식량난’ 31.2%, ‘공개처형’ 22.9%, ‘고문’ 20.2%,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15.6%, ‘이동자유통제’ 5.5%, ‘통신자유통제’ 2.8%, ‘없다’ 1.8%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먹는 문제 해결’ 54.8%, ‘자유로운 의사표현’ 26.1%, ‘법·제도’ 13.9%, ‘외부정보 접근’ 4.3%, ‘없다’ 0.9%로 응답하였다.

● 표 III-6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구분	먹는 문제 해결	자유로운 의사 표현	법·제도	외부정보접근	없다
전체	54.8	26.1	13.9	4.3	0.9
남성	25.0	43.8	31.3	0.0	0.0
여성	59.6	23.2	11.1	5.1	1.0

응답자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해결을 중요시한 반면, 남성들은 정치적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 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은 ‘먹는 문제 해결’ 59.6%, ‘자유로운 의사표현’ 23.2%, ‘법·제도’ 11.1%, ‘외부정보 접근’ 5.1%, ‘없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 43.8%, ‘법·제도’ 31.3%, ‘먹는 문제 해결’ 25.0% 순으로 응답하였다. 당원여부별 차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원이었던 경우 북한 내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자유로운 의사표현’ 83.3%, ‘법·제도’ 16.7%로 응답하였다. 비당원의 응답은 ‘먹는 문제 해결’ 57.8%, ‘자유로운 의사표현’ 22.9%, ‘법·제도’ 13.8%, ‘외부정보 접근’ 4.6%, ‘없다’

I
II
III
IV
V

0.9%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통일연구원 인권인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다(70.97%)는 비율이 없다는 비율(29.03%)보다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은 비율(6.45%)은 매우 낮으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 계기가 ‘자본주의 인권논리에 대한 비판(19.35%)’, ‘남한 등 자본주의 세계의 열악한 인권 실상 비판(25.91%)’, ‘북한인권 우월성에 대한 선전(29.0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서 인권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 방송 등 외부정보(41.94%)’를 지적하기도 하나, ‘직장, 인민반, 근로단체 등에서의 강연 및 학습(22.58%)’, ‘노동신문 등 북한 내부의 매체(16.13%)’, ‘학교교육(19.35%)’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64.52%)’고 응답한 비율이 ‘없다(34.38%)’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력과 함께, 북한이 내부적으로 서구식 인권개념을 비판하면서 ‘우리식 인권’ 개념을 강조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국제적 요인

가. 외부환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재권력자는 안보위협을 근거로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을 정당화하여 왔다.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 상황에서 남한으로부터의 위협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위협

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내부의 세력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반민족적 범죄 등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왔다. 탈북 행위도 반민족적 범죄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국경지역의 탈북자를 현장사살하도록 하는 명령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량난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도강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치적 탈북행위와 단순탈북행위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탈북의 경우에는 지역 내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통한 교양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중국체류 중 한국인학교 및 외교공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거나, 중국에서 몽골 및 동남아국가로 불법이동하다가 단속된 탈북자 등 한국입국을 기도한 경우에는 ‘한국문제’로 구분하여 교화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게 된다. 국군포로 등 이산가족들의 상봉 및 탈북을 돕는 중개인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북한주민의 탈북 중개와는 구분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경제난이후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외부위협을 과장하여 대내통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외부위협 자체가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대내통제와 주민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억압논리는 국권론에 기반하고 있다.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북한의 논리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통해 일본 ‘식민지’ 경험을 부각시킴으로

I
II
III
IV
V

써 ‘자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자주권의 상실 여부의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인식함으로써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주권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⁷⁸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을 근거로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비난공세를 펼쳐 왔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에 북한인권법안들이 제출되자,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여 왔다.

김정일은 이와 같이 국권론을 선군정치와 연결하여 접근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세력의 인권개선 요구가 보다 집요해지고 장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사상과 제도를 굳건하게 보위하며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은 강력한 국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군은 인권옹호의 선결이며 믿음직한 담보”,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고 대내홍보논리를 정립하고 있다.⁷⁹

이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의 억압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위협 논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권론적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하여 홍보함으로써 대내통제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안보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⁷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⁷⁹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p. 74-75.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며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체감하는 안보위협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평화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리도 부각되었다.⁸⁰ 북한의 요구는 초기 남한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에서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변화되어 왔다.

나. 인권감시제도

국내외 인권감시제도 존재여부는 특정국의 인권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못하여 왔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부의 인권감시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1993년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내부의 인권침해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제기에 대한 대응창구로 기능하여 왔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엠네스티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 교화소를 방문하게 한 바 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주로 남한 내의 인권상황을 지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2004년 탈북자 집단입국을 계기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서한을 보내 남한에 의한 납치라고 부각

⁸⁰ 서보현,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시켰다.⁸¹ 이와 같이 북한내부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내부인권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의 비정부기구들이 상주하게 되면서, 제한적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이 외부인력들의 내부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상주 외부인력들도 북한 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나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상주사업을 하다 철수한 실무자들이나 단체들을 통해 북한내부의 인권침해 상황들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남측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방북회수가 증가하고 체류기간도 장기화되게 되었다. 또한 일본 비정부기구 등 북한 내 자료수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북한 내 공개처형, 공개재판, 구류장 인권침해 현장 등을 담은 영상자료 등을 제작하여 거래하는 중개인들의 활동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비정부기구(좋은벗들, 열린북한방송 등)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안별 인권침해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인권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왔으며, 사안별 침해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경지역 거주 북한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당국의 단속실태

81. 『동아일보』, 2004년 9월 5일자.

등 제한적이거나 북한상황들이 신속하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이제 까지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감시제도 및 기구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 환경은 이전에 비해 변화하고 있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상황을 매년 유엔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여 왔다.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탈북자 및 관련국 현지조사를 통해 북한당국의 법률제정 및 개정 등 진전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산가족문제, 납치자문제, 북한노동자의 인권문제, 불균등 개발전략 등을 새롭게 지적하여 왔다.

다. 대북지원

외부의 원조가 인권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추진되어 왔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인도지원조정국을 통한 공동지원 호소(CAP)에 따라 대북지원이 실시되어 왔으나, 2004년 9월 북한당국은 유엔차원의 공동지원호소를 거부하고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⁸² 대북지원이 북한사회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⁸²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정윤희 대외처장은 국제지원단체에게 북한 당국이 유엔의 2005년 대북 지원 합동호소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장기간의 인도적지원에 따른 지원방식 전환 필요성, 안보상 감시 및 현장접근 등 국제기구 수용 어려움,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감시 단순화 필요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감시와 현장접근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줄이도록 요청하였다. 북한 당국은 감시와 현장 접근 절차를 단순화 할 경우 양자간 지원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지역의 능력 확충하기 위한 기술지원이나 개발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www.reliefweb.int>>, (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Agu/Sep 2004, Sept 30, 2004).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미흡하다. 그러나 대체로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계량적인 방식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이후 북한 내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 현상이 급감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1996-1997년을 정점으로 취약계층 사망자가 극에 달하였으나, 생존 주민들이 중앙배급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장사 등 생존방식을 찾아 나서게 되었기 때문에 아사자가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북지원은 국제기구, 개별국가, 비정부기구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지원주체들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지원환경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식량계획은 지원지역에 대한 접근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며, 접근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식량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유엔아동기금은 북한보건성과 공동으로 어린이영양실태조사를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지원의 영향력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⁸³

기존 사례연구들에 따르면, 대외원조가 인권개선 및 기타제도 보완 요구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 변수가 된다.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 III-9, III-10에서와 같다. 대북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북한과의 대화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 규모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인도주의 및 동포애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왔다. 한국정부의 식량차관⁸⁴과 비료지원⁸⁵은 식량난으로 인해

⁸³ 지난 5년 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가 2009년 10월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적대적이고 대결적이었던 남북관계를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당국 간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실제적으로 대북지원 결정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가 병행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과 북핵문제 해결노력과 연계하여 에너지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1998년, 1999년, 2001년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지원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 가을 6자회담의 진전을 감안하여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재개되었으며, 2008년에는 50만 톤 식량지원(40만 톤 WFP, 10만 톤 미국 NGO)이 합의되었으나, 북한 내 투명성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3의 식량지원만이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현재 1조 2천 억 달러(식량지원 60%, 에너지지원 40%) 상당의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소규모의 의료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⁸⁶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의 불가역적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⁸⁴- 2000년 외국산 쌀 30만톤 및 중국산 옥수수 20만톤(1,057억), 2002년 국내산 쌀 40만톤(1,510억), 2003년 국내산 쌀 40만톤(1,510억), 2004년 국내산 쌀 10만톤 및 외국산 쌀 30만톤(1,359억), 2005년 국내산 쌀 40만톤 및 외국산 쌀 10만톤(1,787억), 2007년 국내산 쌀 15만 톤, 외국산 쌀 25만톤(1,649억원) 총계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톤(8,872억원)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하였다.

⁸⁵- 비료지원은 1999년 15.5만 톤을 시작으로 매년 30만 톤(2001년 20만톤, 2005년 35만톤, 2006년 35만톤) 씩 2007년까지 255.5만톤(7,995억원)을 지원하였다.

⁸⁶- Mark E. Manyin and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0095, September 9, 2009.

I
II
III
IV
V

대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위성발사(탄도미사일관련 기술개발)로 유엔안보리 1874호 제재가 실시되었고,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국제 및 미국시찰단을 추방하였다. 2007년과 2008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불능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의회는 북핵문제 돌파이후 대통령이 대북지원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2009년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비핵화지원을 위한 추가예산할당(1억 5000만 달러)을 요청하였으나 상하원의 반대로 기각되었다.

● 표 III-7 미국의 대북지원 현황(1995-2008)

	식량지원 (MT)	식량지원 (백만달러)	KEDO (백만달러)	6자회담 관련 중유지원	6자회담 - 핵 폐기	의약품 및 기타	소계
1995	0	\$0.00	\$9.50	-	-	\$0.20	\$9.70
1996	19500	\$8.30	\$22.00	-	-	\$0.00	\$30.30
1997	177,000	\$52.40	\$25.00	-	-	\$5.00	\$82.40
1998	200,000	\$72.90	\$50.00	-	-	\$0.00	\$122.90
1999	695,194	\$222.10	\$65.10	-	-	\$0.00	\$287.20
2000	265,000	\$74.30	\$64.40	-	-	\$0.00	\$138.70
2001	350,000	\$58.07	\$74.90	-	-	\$0.00	\$132.97
2002	207,000	\$50.40	\$90.50	-	-	\$0.00	\$140.90
2003	40,200	\$25.48	\$2.30	-	-	\$0.00	\$27.98
2004	110,000	\$36.30	\$0.00	-	-	\$0.10	\$36.40
2005	25,000	\$5.70	-	-	-	-	\$5.70
2006	0	\$0.00	-	-	-	\$0.00	\$0.00

	식량지원 (MT)	식량지원 (백만달러)	KEDO (백만달러)	6자회담 관련 중유지원	6자회담 - 핵 폐기	의약품 및 기타	소계
2007	0	\$0.00	-	\$25.00	\$20.00	\$0.10	\$45.10
2008	148,270	\$93.70*	-	\$106.00	-	\$0.00	\$199.70
2009	21,000	\$7.10*	-	\$15.00	-	\$4.00	\$26.10
총계	2,258,164	\$706.75	\$403.70	\$146.00	\$20.00	\$9.40	\$1,285.85

출처: Mark E. Manyin and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0095, September 9, 2009, p. 2(*:추정치).

중국의 대북지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감안하여 중유 및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은 대북지원의 상세내역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당국에 대한 직접지원 식량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비정부기구를 통한 실험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개발차관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초기에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납치자 문제를 근거로 대북지원을 중단하였다. 일본은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중유 20만 톤)조차도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유보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로 인해 대규모 차관지원사업은 한국정부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외원조에서 인권문제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I
II
III
IV
V

표 III-8 유엔인도지원조정국 집계 대북지원 현황

연 도	목표액	지원액	비 고(단위 만불)	지원/목표
1차 (95.9~96.6)	2,032	927	미국 222.5, 일본 50, EU 38	45.6%
2차 (96.7~97.3)	4,364	3,439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EU 860	78.8%
3차 (97.4~97.12)	18,439	15,838	미국 4,537, 한국 2,533, EU 2,752, 일본 2,700	85.9%
4차 (98.1~98.12)	38,324	21,587	미국 17,185, EU 953, 한국 1,08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이집트 280, 호주 130, 체코 2	56.3%
5차 (99.1~99.12)	29,208	18,989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65.0%
6차 (00.1~00.12)	31,376	15,310	일본 9,566, 미국 2,923, 한국, 1,807,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48.8%
7차 (01.1~01.12)	38,398	24,797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태리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63.5%
8차 (02.1~02.12)	24,683	22,00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89.1%
9차 (03.1~03.12)	22,937	13,31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태리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58.0%
10차 (04.1~04.12)	2892	15,158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태리 403	72.6%
2005	-	4,523	EU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
2006	-	1,915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

연 도	목표액	지원액	비 고(단위 만불)	지원/ 목표
2007	-	9,986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EU 398, 이태리 377, 노르웨이 335	-
2008	-	4,358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태리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
2009,11	-	3,739	유엔긴급지원자금 1,899, 스웨덴 693, 노르웨이 412, 캐나다 330, 호주 260, 스위스 68, 핀란드 39, 룩셈부르크 35	-
총계		175,858		

출처: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November 13, 2009).

표 III-9 한국정부차원 대북무상지원 세부내역

기간	정 부 차 원	합 계
1995	23,200만불 (1,854억원) 쌀 15만톤	23,225만불
	직접 지원	(1,856억원)
1996	305만불 (24억원) CSB, 분유, 기상자재	460만불
	UN기구 경유	(36억원)
1997	2,667만불 (240억원)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4,723만불
	UN기구 경유	(422억원)
1998	1,100만불 (154억원)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3,185만불
	UN기구 경유	(429억원)
1999	2,825만불 (339억원) 비료 11.5만톤	4,688만불
	직접지원	(562억원)
2000	8,139만불 (978억원) 비료 30만톤	11,377만불
	직접지원	(1,365억원)
2001	7,522만불 (975억원)	13,539만불
	내의 150만불,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직접지원/WFP/WHO경유	(1,757억원)

기간	정 부 차 원	합 계
2002	8,915만불 (1,140억원)	13,492만불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말라리아방역 직접지원/WFP/WHO경유	(1,716억원)
2003	9,377만불 (1,097억원)	15,763만불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1,863억원)
	직접지원/WFP/UNICEF경유	
2004	11,541만불 (1,313억원)	24,791만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 옥수수 10만톤	(2,871억원)
	직접지원/WFP/WHO경유	
2005	13,588만불 (1,360억원)	21,254만불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2,139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2006	22,740만불 (2,273억원)	29,828만불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2,982억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2007	20,893만불 (1,983억원)	30,461만불
	비료 30만톤,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 수해복구,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2,892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2008	3,996만불 (438억원)	10,456만불
	말라리아 방제품, 영유아, 의료장비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1,163억원)
	직접지원/WHO/WFP/UNICEF/IVI경유	
2009	446만불 (59억원)	2,680만불
9월 현재	말라리아 방제품, 의료인력교육 지원	(355억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직접지원/WHO/IVI 경유	
합계	137,254만불 (14,227억원)	209,922만불 (22,408억원)

출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9월호』 (서울: 통일부, 2009).

라. 군비거래

사례연구들에 따르면, 특정국에 대한 군비유입 규모가 증가할 경우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권침해 경향을 보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도 북한군부의 실제적 영향력 증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거래가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밀 군비 거래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⁸⁷ 제3세계 국가와 달리 외부세계의 북한에 대한 군비지원보다는 북한군부가 자체적으로 군비를 개발하고 수출입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⁸ 따라서 이와 같이 공고한 군부의 영향력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군부는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특권적인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군부에 속한 개인 병사들도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군인 신분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협동농장 혹은 개인들의 생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⁹

●표 III -10 북한의 무기 수출입 추정치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기 수출	17.5	106.6	229.5	185.0	60.5	124.6	64.2	49.6	49.4
무기 수입	25.5	41.5	14.3	14.7	13.6	7.8	8.0	8.3	8.5
무기 거래 수지	-8.1	65.1	215.3	170.3	46.9	116.8	56.2	41.3	40.9

출처: 장형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UN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p. 111.

87- 성채기, “북한 『군사경제 (Military Economy)』의 현황과 실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88- 이 석,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89- 북한이탈주민 박○○, 2009.7.30; 북한이탈주민 강○○, 2009.6.18 면접.

마. 대외무역

국제사회는 특정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무역상 조건 부과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교역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한국에 제한되어 있다.⁹⁰ 일본은 2002-2003년을 기점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근거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준비하였고,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북한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중단되었다.

● 표 III-11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1990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합계	4.8	4.1	4.9	7.4	7.4	10.2	13.9	15.8	17.0	19.7	27.8
	(수출)	(1.2)	(0.6)	(0.4)	(1.7)	(2.7)	(3.9)	(5.9)	(5.0)	(4.7)	(5.8)	(7.5)
	(수입)	(3.6)	(3.5)	(4.5)	(5.7)	(4.7)	(6.3)	(8.0)	(10.8)	(12.3)	(13.9)	(20.3)
한국	합계			4.2	4.1	6.4	7.2	7.0	10.6	13.5	17.9	18.2
	(수출)			(1.5)	(1.8)	(2.7)	(2.9)	(2.6)	(3.4)	(5.2)	(7.6)	(9.3)
	(수입)			(2.7)	(2.3)	(3.7)	(4.3)	(4.4)	(7.2)	(8.3)	(10.3)	(8.9)
태국	합계	0.4	0.1	2.1	1.3	2.2	2.5	3.3	3.3	3.7	2.3	0.8
	(수출)	(0.3)	(0.01)	(0.2)	(0.2)	(0.5)	(0.5)	(0.9)	(1.2)	(1.5)	(0.4)	(0.5)
	(수입)	(0.1)	(0.09)	(1.9)	(1.1)	(1.7)	(2.0)	(2.4)	(2.1)	(2.2)	(.19)	(0.3)
일본	합계	4.8	3.9	4.6	4.7	3.7	2.7	2.5	1.9	1.2	0.09	0.07
	(수출)	(3.0)	(2.2)	(2.6)	(2.2)	(2.3)	(1.7)	(1.6)	(1.3)	(0.8)	(0.0)	(0.0)
	(수입)	(1.8)	(1.7)	(2.0)	(2.5)	(1.4)	(1.0)	(0.9)	(0.6)	(0.4)	(0.09)	(0.07)
러시아	합계	25.7	0.6	0.5	0.7	0.8	1.18	2.1	2.3	2.1	1.6	1.1
	(수출)	(10.5)	(0.1)	(0.1)	(0.1)	(0.1)	(0.03)	(0.1)	(0.1)	(0.2)	(0.3)	(0.13)
	(수입)	(15.2)	(0.5)	(0.4)	(0.6)	(0.7)	(1.15)	(2.0)	(2.2)	(1.9)	(1.3)	(0.97)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⁹⁰ 이 석,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p. 42.

북한의 수출물품이 거의 농산물,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착취 등 노동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제약 등이 부과될 여지가 매우 낮다. 또한 북한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한국이⁹¹ 수출입과정에서 인권사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외무역을 통한 북한인권 노력은 매우 미약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물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상황 악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분적이거나 인권과 무역에 대한 연계가 시도되었다. 개성공단 내 근로자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함께 해외파견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 방식 및 집단합숙 실태 등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여성근로자들을 고용하던 현지기업이 북한 근로자 고용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⁹²

⁹¹ 2008년 경우 북한수출의 60%, 수입의 71%가 중국 및 한국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ick K. Nanto and Chanlett-Avery,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2493, August 14, 2009. p. 34.

⁹² 체코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체코에는 여성 374명과 남성 28명 등 총 402명의 북한인이 근무하였으나, 이들의 임금이 북한당국에게 지불된다는 점에서 노동착취 논란이 제기되었다. 체코 외무부는 이들에 대한 비자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본국철수가 이루어졌다.

4. 제반요인 간 상관관계

가. 사회변화와 인권침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원인은 단순하게 하나의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요인은 체제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계급의 원칙과 집단주의로 인해 개인의 자아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 유일지배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체제적 속성에 의한 인권 침해의 구조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강요당하게 되면서 개인의 권리 의식이 싹틀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군정치에 의해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일반주민에게 확산시키면서 일반적인 군사문화와는 다른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일반주민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덕목으로 강요될 때 개인의 권리 의식 형성은 철저하게 차단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개인에 절대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를 접목시키는 전략이 인권침해에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보다 순종, 질서,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개인이 권리 의식을 갖고, 요구하고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시혜로 주어지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확립하고 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인 권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유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 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주요한 요인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이다. 경제난은 복합적으 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선군 정치에 의한 자원의 편중 배분에 따른 불균등 발전전략으로 인해 전 반적인 사회권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불균등 배분정책으로 인해 일 반주민들과 취약계층의 사회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경제난 에 따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권에 대한 동의가 취약해지고 사회일탈 행위가 확산되면서 체제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통제와 국가처벌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유권이 더욱 제 약되는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넷째,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면서 개인이 가해자로 변화하여 일반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이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으로 마약, 인신매매, 강도·살인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사회권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불균등 발전전략과 불균등 배분정책에 의해 저하되고 있지만 다른 권리의 제약에 의해 저하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이 신 장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유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정보가 유통되는 장마당, 생존을 위한 이동의 증가에 따른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체제 이완을 우려하여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한 여전히 여행증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북한주민들 의 생존권이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I
II
III
IV
V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체제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위협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내적 위기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속성, 일인지배 체제, 경제난에 따른 불균등 발전전략과 배분정책,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의 증가와 위기 의식에 따른 처벌권 강화, 자유권 제약에 따른 사회권 저하의 연계, 외부적 위협의 부각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나. 침해양태 변화

북한의 사회통제는 중앙배급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해 왔다. 식량배급을 근거로 개인 이동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동지에서는 숙박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주민이동에 대한 제한 제도는 당국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 근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 제도가 붕괴되면서, 당국조차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사적 경제활동들을 제약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철저한 이동 및 상거래 통제는 대량 아사자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배급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주민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절도, 폭행, 살인 등 사회범죄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당국은 식량배급 재개 계획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외부세력들과 내부의 비사회주의세력들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들어 정기적인 검열과 통제를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범적인 검열에 단속되는 경우 공개처형 등 평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탈북자 증언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양곡, 소, 구리선 등을 절취한 경우 공개처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탈북자들의 규모가 증가하자 시범적으로 인신매매자를 공개처형하여 오고 있다. 공개재판과 처형은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기업소 및 인민반 단위로 공개처형 참관을 독려하였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동원한다는 점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형성에 매우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권가해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건설에 장애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자나 참관자 모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이며 본인들도 향후 동일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과 개선촉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개처형을 일정기간 자제하여 왔다. 2007년 이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공개처형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면에서 감소하였고 범죄유형도 마약 및 밀수, 인신매매 등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정치 우위의 사회로 인한 법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되고 있어,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식량난 이후 출신성분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나, 사법적인 처벌과정에서 적대계층은 가중처벌을 받

I
II
III
IV
V

을 위협이 있다. 사회적 교양의 환경을 명분으로 핵심계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처벌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식량난 이후 법집행 인력들도 자신들의 권력범위를 활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었으며, 정치적 권력 혹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의적인 사건처리를 하게 된다. 특별히 정치적인 범죄 혹은 중앙당검열에 의해 시범적으로 적발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조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지급받게 된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법률들을 제·개정하여 왔으며, 형사소송법 등에 법집행인력들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들을 명문화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조항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집행 관리들조차도 법위반시 자신들에게 처벌이 부여된다는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혹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밀무역 및 도강증개에 관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숙지하고 단속되면 돈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정치적 범죄 혹은 중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는 체포영장발급 및 예심절차, 형집행정지, 신소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⁹³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가중을 우려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결여는 공권력에 대한 인권유린 지속요인으로 작용

⁹³ 북한이탈주민 이○○, 2009.9.24 면접; 북한이탈주민 김○○, 2009.10.29 면접.

하고 있다. 형법에 명시된 임신여성에 대한 형집행정지 조항은 북한 내 일반범죄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탈북하였다가 임신상태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의 경우에는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강제노동을 통한 유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인권 유린상황에 대해 북한법률조항을 들어 부당성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탈북 하지 않은 일반여성들은 당국의 이러한 처사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더하여 중국남성과 동거한 북한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멸시를 반영하는 극단적인 예이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들은 임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국남성과의 동거하였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심각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중앙배급체제가 와해되면서 종합시장 등 지역별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생명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북한당국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주기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장마당에서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고,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조치 및 단속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단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단속기관에 뇌물을 미리 공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들을 몰수당하게 되며, 소규모 되거래로 연명하는 주민들 생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장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소 등에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에 대해 행정처벌법 등에 근거 ‘노동단련형’을 부과하고 있다. 북한사회 내에서 가족들의 생계책임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장마당

I
II
III
IV
V

혹은 이동 중에 물건을 절취당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거래를 하는 경우, 여성들은 성적 폭력 등 신체적 위협에 놓이게 된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식량뿐만 아니라 물자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나 당 기관들은 우월한 위치에서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및 단속 지위를 활용하여 주민들로부터 물자나 돈을 갈취하게 된다. 뇌물을 공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규정된 상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규정한 비사회주의행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시기에 따라 단속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항상 단속과 처벌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사회단속을 책임지는 기관에 있는 보안원 및 보위지도원 등과 사적으로 갈등관계가 형성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은 평소에도 보안원 및 보위지도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악화는 가혹행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필수물자에 대한 중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및 인민반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물자 및 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⁹⁴ 또한 직업이 없는 주부들은 여맹을 통해 사회동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⁹⁴ 2007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윤○○은 본인의 어머니가 인민반장이었는데, 많은 것을 공출한다고 증언하였다. “인민반에서 돈 잘 걷는다. 군대 지원과 콩값 내는 거 뭐 별난 게 다 있다. 고저 뭐 돈이 없으면 뭐 모양 못낸다. 그냥 돈 걷고 매일 돈 걷고 고저 돈 걷으면 반장들이란거 조금 그러니까 뜯어 먹는다. 뭐 국가에 다 만원 내야 될 거 한 3,000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를 바치는 그런 반장들이 많다.” 북한이탈주민 윤○○, 2009.6.3 면접.

경우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금시설의 운영조차도 상당부분이 수감자 가족의 경제적 부조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일탈범죄의 확산에 따라 북한이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단련대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시설단위별로 수감자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단련대의 경우 지역 내 힘든 노동현장에 투입된다. 구금시설 내 수감자에 대한 의복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소 시 착용하였던 옷을 개조하여 일반인과 구분시키고 있다.⁹⁵ 구금시설 내 보안원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수감자 가족이 주는 금품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 발생시 보안원들이 처벌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감자 중 반장, 계산공 및 감시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규율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요구에 대해 나름의 대응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 인권상황은 사회구조변화에 적절하지 않은 이전의 통제제도 및 이에 근거한 단속 및 처벌로 인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행증 및 시장단속 등에 관여된 기관원들도 단속을 미끼로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게 된다. 심지어 국경경비대도 도강안내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탈북행위를 묵인하기도 하여 왔으나, 당국은 상호감시 및 강력한 처벌로 경비대의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회령지역 국경경비대의 경우 도강안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후에 도강자를 통보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⁶

⁹⁵ 북한이탈주민 김○○, 2009.11.12 면접; 전거리교화소 4년 수감경험이 있는 면접자는 입소 시 착용한 옷소매를 뜯어 다른 수감자의 소매와 대체하고, 옷깃이나 주머니 등은 제거하여 착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같은 반에 있던 20명 수감자에 대해 동복 6벌만이 지급되어 가족면회자가 없는 수감자들에게 제공되었다.

⁹⁶ 북한이탈주민 김○○, 2009.11.12 면접.

I
II
III
IV
V

IV. 북한인권 개선 전략



1. 기본방향

북한인권 개선전략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국제, 지역, 양자, 비정부 기구 등)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억압적인 국가의 힘이 강력하거나 혹은 강력한 우방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국제적 인권압력의 영향이 약화된다. 국제인권압력은 적절한 물질적 인센티브나 처벌과 연계되어 있을 때 효력이 있으나, 이러한 영향은 특정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단지 단기적 혹은 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력한 우방국가의 지지가 위협을 받거나 말소될 경우, 국가들은 외부의 인권압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며 침해상황 및 국가권력의 책임성을 가리게 할 새로운 탄압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국제인권압력은 국가억압의 감소를 가져오기 보다는 인권침해전략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속되는 국제적 압력, 개입, 협상은 국내적 제도개혁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폭력의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 내부적 정치상황 및 국제정치에서 변화는 특정국가가 내부적 안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압력의 영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군사혁명 및 기타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사건 등 내부적 위협이 증대되면, 국가는 더욱더 인권침해 양태를 강화하게 된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면 국가가 인지하는 위기상황 동안 내부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안전보장의 수단들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전략은 북한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의 공동의 인식과 목표설정예 기초하여야 한다. 다양한 인권개선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자체가 외부의 북한인권 정책의지를 얼마나 확고한 것으로 인식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정부

가 북한에게 외교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국가와 함께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정책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음의 기본 방향들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북한 인권상황은 각 개별사안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상황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통제기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중앙배급제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통제기제 구조 및 실제적 영향력도 변화되고 있다. 군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뿐만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는 지역단위 통제조직들이 주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자력갱생원칙이 확산되면서 사적인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실시하는 보안인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활용하여 뇌물 등 개인적인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 등도 북한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개선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당국의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및 법제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침해 양태를 보면, 북한의 법률과 제도가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지도자의 교시나 지침이 아닌 법률과 제도에

기반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의 법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북한당국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치지원은 국제사회가 인권침해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법치지원은 단기적으로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국가가 국제사회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은 권리의 주체인 북한주민들의 역량형성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주의적 문화로 인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식량난 이후 사회변화와 함께 외부세계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가 유입되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의 권리 인식이나 비교의식 형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권리인식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대외원조 및 사회개발사업 추진원칙으로 주민참여 및 양성 평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역량형성은 단순히 외부정보 유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부전략

가. 민주주의 확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주민

I

II

III

IV

V

들의 인권개선이 어렵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체제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외부의 체제전환시도는 효율성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특정국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적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왔으나, 수령론에 입각한 통치는 지도자 개인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지침이나 교시에 대해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구조이며, 의견개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외교정책의 주요목표로 민주주의 확산을 설정하여왔다. 표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사회 내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선거지원, 입법부 강화, 지역정부·시민사회 강화 등의 방안들이 활용된다. 북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래의 민주주의 지원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북한사회에서 조선노동당의 영향력과 기존의 정치체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정당설립 등의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조선노동당 내의 투명성 제고 및 민주적 절차 확산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위기관 책임자의 선거 등이 확대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역량 형성 및 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시민사회 제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 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형성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시도가 자칫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표 IV-1 민주주의 지원 양식

분야	분야별 목표	지원 형태
선거과정	자유·공정선거	선거 지원
	강력한 국내 정당	정당 설립
국가기관	민주 헌법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법부와 기타 법률기관	법치 지원
	능력이 있고 대표성을 지닌 입법부	입법부 강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정부	지역정부 개발
	친민주주의 군부	민-군관계
시민사회	적극적인 주창활동(advocacy) NGO	NGO 형성
	정치적 교육받은 시민	시민 교육
	강력한 독립 언론	언론 강화
	강력한 독립 노조	노조 형성

출처: Carothers Thomas,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p. 88.

나. 법치주의 실현

(1) 법·제도적 정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인권존중’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인권조약기구에 대한 의무수행을 위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다.

I
II
III
IV
V

법률보다 중앙당국의 방침이나 교시가 중시되는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기반으로 한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북한법률에 의한 사법처리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우위로 인하여 파생되는, 법치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치보다는 정치우위의 법률 운용으로 주민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기반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적 교양제도가 자의적인 처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교양 등 사회적 교양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이 비교적 경미한 사회범죄자를 지역단위 노동단련대에 수감하여 왔으나, 노동단련형은 교화형 못지않게 가혹한 강제노동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하부단위 지역별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⁹⁷ 이러한 점에서 노동단련대 내에서 강제노동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적인 교정시설 및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형법개정으로 북한이 ‘로동단련형’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노동단련대와 집결소 등은 제도화 된 교정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노동단련대와 집결소 등에서 보안원 등에 의해 교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구금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설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⁹⁷ 북한이탈주민 한○○, 2009.4.20 면접; 북한이탈주민 전○○, 2009.6.10 면접; 북한이탈주민 김○○, 2009.7.2 면접; 북한이탈주민 최○○, 2009.7.14 면접; 북한이탈주민 채○○, 2009.7.30 면접; 북한이탈주민 김○○, 2009.8.11 면접; 북한이탈주민 차○○, 2009.9.8 면접; 북한이탈주민 이○○, 2009.9.24 면접.

● 표 IV-2 법치지원 표준안

목표	방안
기관 개혁	사법개혁 입법 강화(정치제도목표와도 연계) 검사 재교육 경찰 및 구금시설 개혁 국선변호인 강화 대체 갈등조정방안 도입
법률 개정	형법 현대화 민법 보완 새로운 상법 도입
사법인력 능력향상 (upgrade)	변호사회 강화 사법교육 증진
법적 접근성 및 홍보 제고	공익법률 개혁 촉진 법률을 사회적·경제적 목표 추구에 활용하는 주창형 NGO 지지 사법 및 법률개혁 증진 NGO 지원 법률사안 취재 언론가 교육 법률구조기구 재정지원

출처: Thomas Carothers,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p. 168.

(2) 사법기관 인권 교육

권력기관의 실무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식량난 이후 북한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구조와 인권상황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인권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 다른 지역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중앙당국의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간 및 하부관료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활용하고 있다. 인민보안성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에도 뇌물수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중앙

I
II
III
IV
V

검열 뿐만 아니라 비사그루빠 등 다양한 형태의 검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료들의 부패를 주시하고 있다. 식량난 이후 권력기관은 단속을 ‘생계’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지도원 및 안전원들은 단속문건을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 및 돈을 수수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폭력을 활용하게 된다. 뇌물공여가 사회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뇌물구조가 일상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뇌물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계층들은 시범적으로 행해지는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권력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집행절차에서 주요한 원칙을 명시화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경찰 등에 대한 인권교육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⁹⁸ 인권교육 표준안은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 및 제도들을 원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은 경찰에 대해 민주경찰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⁹⁹ 체포,¹⁰⁰ 구금¹⁰¹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강조하고

98. UNHCHR,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99.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 보장 조건,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통보, 지연 없는 재판, 증인 강요 및 자백 금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개입 금지, 수사의 기술적 측면, 증거원 보호관리

100. 무단체포 금지, 체포이후 이행절차, 추가 보호제도, 청소년 체포,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보상, 명예훼손,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101. 고문금지, 피의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청소년 수감자, 여성 수감자, 혐의자에 대

있다. 또한 공권력 및 총기사용,¹⁰² 사회혼란, 비상사태, 군부 갈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¹⁰³ 범죄 및 공권력 남용, 피해자 보호, 경찰의 명령 및 통제 체계와 인권보호, 경찰 내 침해 사례 조사 등에 대한 표준지침도 인권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매뉴얼의 번역 및 발간 비용들을 외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인권교육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간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한국 내 법집행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매뉴얼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국가인권기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구금시설 지원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은 관련 인력들의 폭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적정 수용능력 초과,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냉난방시설 미비, 급식 불량 등으로 인해 영양부족, 질병사망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인력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여 최소한의 수감자

한 면접 조사에 대한 국제기준, 명예훼손,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102.} 규칙, 비폭력적 방법 우선사용, 인도적 수단 사용, 폭력사용 보고, 총기사용, 일반 집회에 대한 경찰대응, 수감자에 대한 폭력 사용, 공권력 사용과 생명권, 초법적 살해, 실종

^{103.} 청소년 보호, 법집행 및 여성의 권리, 난민과 외국인

I
II
III
IV
V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자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당국도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집결소 등의 난방 및 시설보수 등을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교화소 등에서 폭행 등으로 사망한 수감자의 부검을 실시함으로써, 고문 및 구타 등 기타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요건들을 구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⁴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수감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시설요건 및 운용규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보호 요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물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B규약 2차 정기보고서(2003)에서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답변들을 감안하여 북한이 자체 내 구금시설 운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수용이 기대되며, 구금시설 수감자의 인권상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다. 인권개선을 위한 경제적 수단(leverage)

(1) 대북지원과 인권 통합 전략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지원과정에서 수원국의 인권실태를 감안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¹⁰⁴ 북한이탈주민 김○○, 2009.9.17 면접.

실제 효율성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과정에서 인권원칙들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대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개선 촉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부지원이 중단 혹은 삭감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실제 수원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외부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정치적인 명분으로서 인권원칙이 거론되는 경우에는, 외부지원이 수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권상황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외부원조와 인권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 주체들 간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대북지원의 원칙과 목표를 점검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불균등한 개발전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의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회복을 감안한 중장기적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에서 대규모 분담을 수용할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운용되는 국제협력체계인 6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비핵·개방·3000구상’을 공포한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북한 인권과 대북지원 연계 전략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빈곤감축(Poverty Reduction)을 위한 사회개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난으로 중앙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기본적인 생계위협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보장체계의 마비로 인한 인권악화도 매

I
II
III
IV
V

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내부의 절대적인 자원부족 상황에서 분배도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소수의 권력계층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왔다. 절대적인 빈곤계층의 증가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확대되어 왔다.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유린은 일상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들의 인권개선은 빈곤감축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존사례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감축은 단순히 외부의 대규모 지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원국의 정책의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특정국에 대한 지원의 전제로 빈곤감축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요구하고 있다. 빈곤감축전략보고서는 외부 지원기관과 수원국 간의 참여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빈곤감축을 위한 개발지원은 단순한 경제개발 차원 보다는 특정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역량 형성이라는 사회개발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감축의 주체로서 주민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 등을 통해 불균등한 개발전략의 폐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식량난 이후 사회변화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나, 반인권적 제도 및 가부장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피해의 대상자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여성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북한의 사회개발과정에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대외무역 확대와 인권개선

현재 북한의 무역구조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취약한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교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유럽연합국가들은 북한과의 교역 확대가능성을 감안하여 꾸준히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왔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개발, 마약거래, 인신매매,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의혹으로 인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과 협력사업 추진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스스로 경제협력을 위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등과 같은 경제협력지구를 확대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인권개념을 소개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동권 존중 등 주요 인권원칙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무역거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 인권의식 형성

(1) 외부정보 유입

단순한 외부정보 유입이 주민들의 인권인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영상물 등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속될 경우 거액의 뇌물이나 벌금이 소요되며 시범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등 외부영상물들을 보고자 하는

I
II
III
IV
V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과 여가생활에 그치고 있으며, 권리의식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비교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방송이나 영상물이 직접적으로 북한주민의 권리의식을 유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이나 영상물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북한당국에 의한 가혹한 처벌 위협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감안하여, 이들의 북한가족에 대한 정보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남북한 주민 간의 물품 및 송금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조선족 혹은 화교 중개인 등을 통해 가족 간 지원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사업들을 토대로 가족 간의 송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신거래, 물품 지원,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체류 이산가족들의 권리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내부 역량 강화

북한주민들은 당국에 의한 지속적인 사상교양을 받아왔으며, 사회 질서 위협세력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무자비한 처벌을 당연시하여 왔다. 이는 북한당국이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등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시범적인 처벌을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으나 살인 및 흉악범죄자에 대한 공개처형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북한 내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으로 인해, 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의 권리침해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운명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여성들의 경우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능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 및 신체수색 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 내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임신여성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탈북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내 구조화된 반인권적인 문화들은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들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문화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에 인권연구소, 조선장애자 보호연맹, 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 등의 인권단체가 있으며, 노동조합, 농민근로대중조합, 청년동맹, 여맹, 문학예술조합총연맹, 아프리카-아시아 연대위원회 등이 인권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⁵ 이러한 북한의 보고가 사실상 국제사회의 비난제기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구들과의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 국제 인권협력

(1) 국제인권협약 의무 준수

북한당국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에는 극단적으로 반발하며,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을 수용하지

¹⁰⁵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임순희, 최수영, 『북한인권백서 2009』, p. 192.

I
II
III
IV
V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이 가입한 4대 인권협약의 의무들은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09년 12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북한이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과 기술협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¹⁰⁶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가보고서 제출 및 내부 법률 제·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 강제실종 등 기타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권대화 재개 및 다변화 유도

유럽연합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과정에서 인권대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유엔제재로 가시화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관계 중단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인권관련 협력 등이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향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 과정이 구체화되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북 인권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인권협력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점검하여야

¹⁰⁶ 북한은 A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2002년 5월에 제출하였고, B규약 2차 정기보고서는 2000년 3월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1차 정기보고서는 2002년 9월에 제출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매 5년, 4년마다 제출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선적으로 북한당국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별국 및 개별기구별로 북한과의 인권협력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논의를 단순히 체제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협력이 가능한 의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법자금 및 마약문제 관련 법률 제·개정, 유엔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 방북 허용 및 유엔 마약 3대 협약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엔인권기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구체적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인권감시 네트워크 강화

특정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국내의 강력한 인권감시제도의 존재여부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인권감시기구가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특별절차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주제별특별보고관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까지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북한은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I
II
III
IV
V

통해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 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 NGO 및 전문가들이 북한인권상황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인권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정국 내의 인권침해 상황은 정권당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해 폭력적인 대응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유린 양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 국내적 요인은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위협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억압기제로 인한 것이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사전에 색출하여 격리시키기 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용, 성분에 의한 차별 제도화, 공개재판 및 처형을 통한 공포조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혼란, 가부장적이고 반인권적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은 분단상황으로 인한 남한 및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거로 외부세계와 결탁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을 정당화하여 왔다. 이와 함께 식량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봉쇄 및 적대정책의 탓으로 전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공화국’ 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논리로 비난하여 왔다. 북한은 인권조약기구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협약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5년 이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원과정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제반변수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을 제약하는 장애요소들에 대한 처방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I
II
III
IV
V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국가 단위의 단순히 부분적인 처방만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국가들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및 무역관계에서 인권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인권관련 논의가 단순한 비난이나 압력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협력의 제도화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협력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근식. 『형법학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 서보혁.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 2007.
-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전략: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임순희, 최수영.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순희. 『북한여성의 삶: 지속과 변화』. 서울: 해남, 2006.
-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9월호』. 서울: 통일부, 2009.
- Carey, Sabine C. and Poe, Steven C.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Carothers, Thomas.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 Gomez, Mayra. *Human Rights in Cuba, El Salvador and Nicaragua: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Abuse*. London: Routledge, 2003.
- Jefferson, M. Andrew and Jensen, Steffen.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State Officials in the South*. NY: Routledge-Cavendish, 2009.
- McChesney, Allan. *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ashington, D. 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00.

Thakur, Ramesh and Malcontent, Peter. (eds.). *From Sovereign Impunity to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The Search for Justice in a World of States*. Tokyo: UN University Press, 2004.

2. 논문

- 김수암. “북한인권 논의의 현황과 과제.” 민화협 세미나, 2009.
- 김은경.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공민적 의무.” 『정치법률연구』. 제1호, 2005.
-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종욱.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관한 새로운 모색: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권 1호(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 박정원.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과 평가: 2007년 북한형법 부칙 채택과 관련하여.” 제144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2009.8.24.
- 박희철. “현대부르조아국가법의 반동적 특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0권 제1호, 2004.
- 법 료.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 기초발제, 2009.10.15.
- 성채기. “북한 『군사경제 (Military Economy)』의 현황과 실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 『근로자』. 제11호,

1985.

- 여성인권대사실. “북한인권문제 기초토론자료집.” 여성인권대사실, 2006
- 오승렬.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 국가안보 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이 석.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 장형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UN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09.10.26.
- 정영철. “북한의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Barratt Bethany. “Aiding or Abetting: British Foreign Aid Decisions and Recipient Country Human Right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Callaway Rhonda L. and Harrelson-Stephens Julie. “The Path from Trade to Human Rights: The Democracy and Development Detour.”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Cardenas, Sonia. “Norm Collision: Explaining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on State Behavio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Issue 2, 2004.
- Davis, Daine E. “Undermining the Rule of Law: Democratization and the Dark Side of Mexico.”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8, No. 1, 2006.
- Haggard, Stephan and Noland, Marcus. 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 *East-West Center Paper Series*. No. 20, October 2009.
- Miller Dawn. “Security at What Cost? Arms Transfers to the

- Developing World and Human Right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Poe Steven C. and Smith Kara. “Providing Subsistence Rights: Do States Make a Difference?”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Poe Steven. “The Decision to Repress: An Integr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Research on Human Rights and Repression.” Carey, Sabine C. and Poe, Steven C.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Policzer Pablo. “How Organizations Shape Human Rights Violations.”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Rodwan Abouharb M. and Cingranelli David L. “Human Rights and Structural Adjustment: The Importance of Selection.” Sabine C. Carey & Steven C. Poe,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 Sen, Amartya. “An argument for the Primacy of Political Rights: Freedom and Needs.” *New Republic* 10, January 1994.
- Smeulerus Alette. “What Transforms Ordinary People into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Carey, Sabine C. and Poe, Steven C. (eds.). *Under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Wilt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4.

3. 기타자료

Human Rights Watch, *Guests of the Governor: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mines the Rule of Law in Jordan*, 2009.

- Manyin, Mark E. and Nikitin, Mary Beth,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0095, September 9, 2009.
- Manyin, Mark E. and Nikitin, Mary Beth,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S21834, July 31, 2008.
- Muntarbhon, Vitit.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7/20, 2008.
- Nanto, Dick K. and Chanlett-Avery,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2493, August 14, 2009.
- UNHCHR,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 『로동신문』.
- 『오늘의 북한소식』.
- <<http://www.hrschool.org>>.
- <<http://www.reliefweb.int>>.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 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9,5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8,5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5,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7,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8,5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7,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6,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7,5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8,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6,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6,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6,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문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www.kinu.or.kr

